

# 한화 포레나 제주에듀시티 입주자모집공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애플 앱 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 입주자모집공고의 자격 제한 및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관련 건본주택 운영 안내

- ※ 한화 포레나 제주에듀시티는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건본주택 인원이 제한 될 수 있으며, 정부 정책에 따라 일반관람으로 건본주택(<https://forena.devnexmedia.com/jeueducity/>)을 운영할 예정이며, 분양일정, 청약안내, 상품안내 등 관련사항은 건본주택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 관련 거리두기 완화로 당첨자 발표 이후 서류접수기간 및 분양계약체결에 따른 당첨자에 한해 건본주택을 관람 하실 수 있습니다.
  2.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 체결은 일정 기간을 통해 운영될 예정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첨자 발표일 이후 고지 할 예정입니다.
  3. 건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 대상자, 감염병 의심자 등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 최근 해외입국자 (15일 이내)
    - 건본주택 입장 전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 건본주택 입장 시 열화상카메라 및 비접촉 체온계를 통한 체온이 37.5도가 넘을 경우
    - 손 소독제, 비접촉 체온계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
-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건본주택 관람 및 일정 등은 변경 될 수 있으며, 사업주체가 안내한 해당 기간과 운영시간 외에는 건본주택 관람이 불가하며, 변경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 할 예정입니다.
- ※ 본 아파트는 건본주택 운영으로 인한 입주자모집공고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상담전화(1533-1800)를 실시 할 예정이나, 간혹 폭주하는 전화상담 신청으로 인해 다소 대기시간이 지연 될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전화상담 시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전달로 인해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청약과 관련된 전화상담은 청약 신청 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 신청 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확인 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 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2.02.28.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08.19. 입니다.**(청약자격 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 우선 등의 청약자격 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제주특별자치도)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외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해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 여부와 관계 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제주특별자치도)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이며, 본 아파트는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로서 「주택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권 전매에 제한이 없습니다. 단, 계약금(총 공급금액의 10%)을 모두 완납 후 전매가 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8.19)**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제주특별자치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2021.08.19. 이전부터 계속 거주)가 우선합니다.
- 2021.05.28.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 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 공급 대상으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 공급 대상으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 세대 ”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 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2항에 의거 청약접수 시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에 대하여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의 경우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는 60%를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 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필요 (1순위, 12개월이상, 예치금 납입횟수 12회 이상)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세대주 요건	-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인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
APT(특별공급/1·2순위)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O	O	O	O
APT무순위 / 잔여세대 / 취소 후 재공급	O	O	X	X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 청약 Home ’ 홈페이지([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 청약가상 체킹 ”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 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 신청(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 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 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 접수해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 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4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 (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때까지로 함) 인터넷 홈페이지(<https://forena.devnexmedia.com/jeueducity/>)에 공개되며, 공개 기간이 경과 한 다음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의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 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4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40%까지 지역 우선 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 등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 된 예비공급 세대수 만큼 지역 우선 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 등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 선정 내역은 무효처리 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 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 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일반지역(비규제지역)인 제주특별자치도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일반지역(비규제지역) 내 6억원 이상의 주택거래계약을 (최초 공급 계약 및 분양권, 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 미제출시에는 계약자 본인이 직접 실거래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신고 거부, 서류미비, 미 제출한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 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할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02.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11.16.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전매 및 재당첨 등에 관한 사항은 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 내용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제한 및 전매 금지, 가점제 재당첨 제한, 예비입주자 선정 등의 사항은 청약 시점의 관계 법규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공급절서 교란 금지, 벌칙」에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 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 계약이 취소 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법」제101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불법 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 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 정지, 등록 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 제19조 제4항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우선공급 합니다.

구분	일반공급		당첨자 발표	당첨자 서류제출	계약 체결
	1순위	2순위			
일정	2022.08.29(월)	2022.08.30(화)	2022.09.05(월)	2022.09.13.(화) ~ 09.18.(일)	2022.09.23.(금) ~ 09.26.(월)
방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방문접수 (10:00 ~ 17:00)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li> <li>- PC : www.applyhome.co.kr</li> <li>- 스마트폰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li> <li>- PC : www.applyhome.co.kr</li> <li>- 스마트폰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본주택</li> <li>■ 주소 :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2468</li> <li>■ 문의 : 1533 - 1800</li> </ul>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단, 코로나19로 인해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 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 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 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인인증서를 청약 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 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02.28.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 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청 건축과-55830호(2022.08.18.)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780 외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1층, 지상 5층 29개동 총 50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5년 1월 예정(정확한 입주 일자는 추후 통보)
- 공급대상

(단위 : m<sup>2</sup>, 세대)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 기준)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m <sup>2</sup> )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 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계						
민영 주택	2022000568	01	084.9300	84	84.93	22.14	107.07	68.69	175.75	128.31787	112	112	24
		02	099.8600A	99A	99.86	25.57	125.43	80.76	206.19	150.87511	130	130	28
		03	099.8900B	99B	99.89	26.08	125.97	80.79	206.76	150.92043	40	40	10
		04	099.8600C	99C	99.86	25.48	125.34	80.76	206.10	150.87511	5	5	-
		05	099.8900D	99D	99.89	26.15	126.04	80.79	206.83	150.92043	2	2	-
		06	120.7600	120	120.76	33.03	153.79	97.66	251.45	182.45221	3	3	-
		07	125.6000	125	125.60	32.47	158.07	101.58	259.65	189.76481	79	79	18
		08	136.9400	136	136.94	34.67	171.61	110.75	282.36	206.89803	119	119	26
		09	137.5600	137	137.56	36.33	173.89	111.25	285.14	207.83477	2	2	-
		10	210.9700	210	210.97	56.51	267.48	170.62	438.10	318.74746	11	11	-
합 계											503	503	106

■ 공급금액 및 납부 일정

(단위 : 세대 / 원)

약식 표기	층수	해당 세대 수	공급금액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대지비	건축비	부가가치세	계	계약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2023-04-20	2023-07-20	2023-10-20	2024-01-19	2024-04-19	2024-07-19	입주자정일
84	1층	22	251,087,850	426,612,150	-	677,700,000	10,000,000	57,770,000	67,770,000	67,770,000	67,770,000	67,770,000	67,770,000	67,770,000	203,310,000
	2층	24	255,052,200	433,347,800	-	688,400,000	10,000,000	58,840,000	68,840,000	68,840,000	68,840,000	68,840,000	68,840,000	68,840,000	206,520,000
	3층	24	257,682,750	437,817,250	-	695,500,000	10,000,000	59,550,000	69,550,000	69,550,000	69,550,000	69,550,000	69,550,000	69,550,000	208,650,000
	4층	21	260,313,300	442,286,700	-	702,600,000	10,000,000	60,260,000	70,260,000	70,260,000	70,260,000	70,260,000	70,260,000	70,260,000	210,780,000
	5층	21	264,277,650	449,022,350	-	713,300,000	10,000,000	61,330,000	71,330,000	71,330,000	71,330,000	71,330,000	71,330,000	71,330,000	213,990,000
99A	1층	28	300,734,850	510,965,150	-	811,700,000	10,000,000	71,170,000	81,170,000	81,170,000	81,170,000	81,170,000	81,170,000	81,170,000	243,510,000
	2층	28	305,477,250	519,022,750	-	824,500,000	10,000,000	72,450,000	82,450,000	82,450,000	82,450,000	82,450,000	82,450,000	82,450,000	247,350,000
	3층	28	308,626,500	524,373,500	-	833,000,000	10,000,000	73,300,000	83,300,000	83,300,000	83,300,000	83,300,000	83,300,000	83,300,000	249,900,000
	4층	23	311,775,750	529,724,250	-	841,500,000	10,000,000	74,150,000	84,150,000	84,150,000	84,150,000	84,150,000	84,150,000	84,150,000	252,450,000
	5층	23	316,518,150	537,781,850	-	854,300,000	10,000,000	75,430,000	85,430,000	85,430,000	85,430,000	85,430,000	85,430,000	85,430,000	256,290,000
99B	1층	9	300,253,200	510,146,800	-	810,400,000	10,000,000	71,040,000	81,040,000	81,040,000	81,040,000	81,040,000	81,040,000	81,040,000	243,120,000
	2층	10	304,995,600	518,204,400	-	823,200,000	10,000,000	72,320,000	82,320,000	82,320,000	82,320,000	82,320,000	82,320,000	82,320,000	246,960,000
	3층	10	308,144,850	523,555,150	-	831,700,000	10,000,000	73,170,000	83,170,000	83,170,000	83,170,000	83,170,000	83,170,000	83,170,000	249,510,000
	4층	6	311,294,100	528,905,900	-	840,200,000	10,000,000	74,020,000	84,020,000	84,020,000	84,020,000	84,020,000	84,020,000	84,020,000	252,060,000
	5층	5	315,999,450	536,900,550	-	852,900,000	10,000,000	75,290,000	85,290,000	85,290,000	85,290,000	85,290,000	85,290,000	85,290,000	255,870,000
99C	4층	5	331,634,550	563,465,450	-	895,100,000	10,000,000	79,510,000	89,510,000	89,510,000	89,510,000	89,510,000	89,510,000	89,510,000	268,530,000
99D	4층	2	331,560,450	563,339,550	-	894,900,000	10,000,000	79,490,000	89,490,000	89,490,000	89,490,000	89,490,000	89,490,000	89,490,000	268,470,000
120	4층	3	378,753,900	643,405,545	64,340,555	1,086,500,000	10,000,000	98,650,000	108,650,000	108,650,000	108,650,000	108,650,000	108,650,000	108,650,000	325,950,000
125	1층	18	365,158,500	620,310,455	62,031,045	1,047,500,000	10,000,000	94,750,000	104,750,000	104,750,000	104,750,000	104,750,000	104,750,000	104,750,000	314,250,000
	2층	18	370,910,400	630,081,455	63,008,145	1,064,000,000	10,000,000	96,400,000	106,400,000	106,400,000	106,400,000	106,400,000	106,400,000	106,400,000	319,200,000
	3층	18	374,745,000	636,595,455	63,659,545	1,075,000,000	10,000,000	97,500,000	107,500,000	107,500,000	107,500,000	107,500,000	107,500,000	107,500,000	322,500,000

	4층	18	378,579,600	643,109,455	64,310,945	1,086,000,000	10,000,000	98,600,000	108,600,000	108,600,000	108,600,000	108,600,000	108,600,000	108,600,000	325,800,000
	5층	7	384,331,500	652,880,455	65,288,045	1,102,500,000	10,000,000	100,250,000	110,250,000	110,250,000	110,250,000	110,250,000	110,250,000	110,250,000	330,750,000
136	1층	26	454,853,280	772,678,836	77,267,884	1,304,800,000	10,000,000	120,480,000	130,480,000	130,480,000	130,480,000	130,480,000	130,480,000	130,480,000	391,440,000
	2층	26	461,999,580	784,818,564	78,481,856	1,325,300,000	10,000,000	122,530,000	132,530,000	132,530,000	132,530,000	132,530,000	132,530,000	132,530,000	397,590,000
	3층	26	466,740,540	792,872,236	79,287,224	1,338,900,000	10,000,000	123,890,000	133,890,000	133,890,000	133,890,000	133,890,000	133,890,000	133,890,000	401,670,000
	4층	26	471,516,360	800,985,127	80,098,513	1,352,600,000	10,000,000	125,260,000	135,260,000	135,260,000	135,260,000	135,260,000	135,260,000	135,260,000	405,780,000
	5층	15	478,627,800	813,065,636	81,306,564	1,373,000,000	10,000,000	127,300,000	137,300,000	137,300,000	137,300,000	137,300,000	137,300,000	137,300,000	411,900,000
137	4층	2	415,147,740	705,229,327	70,522,933	1,190,900,000	10,000,000	109,090,000	119,090,000	119,090,000	119,090,000	119,090,000	119,090,000	119,090,000	357,270,000
210	5층	11	1,358,319,900	2,307,436,455	230,743,645	3,896,500,000	10,000,000	379,650,000	389,650,000	389,650,000	389,650,000	389,650,000	389,650,000	389,650,000	1,168,950,000

※ 평형 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공급안내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해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주차장, 지하층, 주민공동시설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주거공용 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 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 면적이 당해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 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단소조정으로 인하여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 합과는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계약 시 체결된 건물의 계약면적 및 대지의 공유지분은 공부정리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나,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상호정산하기로 한다. 단, 소수점 이하의 면적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을 하지 아니한다.

※ 주택형의 표시 안내

주택형(㎡)	084.93	099.86A	099.89B	099.86C	099.89D	120.76	125.60	136.94	137.56	210.97
견본주택 등의 약식 표기	84	99A	99B	99C	99D	120	125	136	137	210

#### ■ 공통사항

- 상기 공급금액은 전용면적 100㎡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100㎡초과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상기 공급금액은 사업주체의 자체심의 결과 주택형별, 동별, 층별, 향별 등으로 차등을 두어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가 미 포함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 및 유상 옵션 비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이며, 발코니 확장 및 플러스 옵션은 분양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분양 계약 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 가능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기준입니다.(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호수를 적용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으며,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단,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해당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체료 납부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중도금은 본 아파트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 매입비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단,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이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로 감리자의 건축 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분양대금 납부 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 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불이익이 생길 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분양가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 관련 조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과세 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 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지번(공급위치), 단지 명칭, 동 표시, 외부 색채와 계획, 조경시설물 등이 관계기관 심의 및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 및 판매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변경된 분양 및 판매조건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분양자는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구조물 등 제반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 제기 및 그밖의 인쇄물이나 구두 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 할 경우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II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 ■ 일반공급

#### □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8.19.)**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하는 경우 한정)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 청약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1년 이상 거주자가 1년 미만 거주자보다 우선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제주특별자치도 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기타지역 거주자로 인정되며, 본 주택의 해당 순위(1순위 및 2순위) 입주자 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합니다.

#### □ 청약신청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 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 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 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단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 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확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반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 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② 청약예금 지역 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 할 경우 해당 구간의 청약 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입주자 저축 순위별 요건

구분	거주구분	순위	주택형	청약관련 신청자격
민영 주택	1. 해당지역 - 제주특별 자치도 1년 이상 거주자	1순위	전용 85㎡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면적 85㎡ 이하 : 가점제 (40%) / 추첨제 (6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li>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접수)</li> <li>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li> <li>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ul>
			전용 85㎡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면적 85㎡ 초과 : 추첨제 (100%) 적용</li>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li> <li>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②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li> <li>③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ul>
	2순위	전 주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 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li> </ul>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 제19조 제3항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주택공급신청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청약 예치기준금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별표2])

구 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포함)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 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합니다.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 분	내용
① 무주택기간	<p>1)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8.19.)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p> <p>2) 소형·저가 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p>

적용기준	<p>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p> <p>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p> <p>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p> <p>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p> <p>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p>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p>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p> <p>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직계존속</li> <li>-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li> </ul> <p>※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p> <p>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li> </ul> <p>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li> <li>-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li> </ul>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p>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 기간을 산정한다.</p>
④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p>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 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p>

▣ 청약 가점제 산정 기준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이상 ~ 9년미만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 제출)</li> <li>■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li> <li>■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li> </ul>
		1년 미만	2	9년이상 ~ 10년미만	20	
		1년이상 ~ 2년미만	4	10년이상 ~ 11년미만	22	
		2년이상 ~ 3년미만	6	11년이상 ~ 12년미만	24	
		3년이상 ~ 4년미만	8	12년이상 ~ 13년미만	26	
		4년이상 ~ 5년미만	10	13년이상 ~ 14년미만	28	
		5년이상 ~ 6년미만	12	14년이상 ~ 15년미만	30	
		6년이상 ~ 7년미만	14	15년이상	32	
② 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표 등·초본</li> <li>■ 가족관계증명서 ※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li> <li>■ 만 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①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②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li> </ul>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거주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이상 ~ 9년미만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시에 자동 계산됨)</li> </ul>
		6개월 이상 ~ 1년미만	2	9년이상 ~ 10년미만	11	
		1년이상 ~ 2년미만	3	10년이상 ~ 11년미만	12	
		2년이상 ~ 3년미만	4	11년이상 ~ 12년미만	13	
		3년이상 ~ 4년미만	5	12년이상 ~ 13년미만	14	
		4년이상 ~ 5년미만	6	13년이상 ~ 14년미만	15	
		5년이상 ~ 6년미만	7	14년이상 ~ 15년미만	16	
		6년이상 ~ 7년미만	8	15년이상	17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 등
- 주택처분 기준일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 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공계약체결일**
  -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 되어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정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소형·저가 주택 1호 또는 1세대를 소유한 경우의 특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17조,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비수도권 8천만원(수도권 1억 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소형·저가 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민영주택에 일반공급으로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등’보유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릅니다.
- ③ ‘분양권 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 ‘소형·저가주택 등’에 관한 특례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청약 신청 시에만 인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주택 판정기준 및 ‘소형·저가주택’ 특례 기준이 경합할 경우의 적용기준

경합	주택수	적용기준
제53조 각호(5호 20㎡이하 제외) + 소형·저가	1	소형·저가주택 특례 미적용
제53조 5호(20㎡ 이하) + 소형·저가	2	5호 미적용 및 소형·저가 특례 미적용
제53조 각호 + 제5호(20㎡ 이하)	1	5호 미적용
제53조 각호(5호 20㎡이하 제외) + 제6호(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주택 소유)	0	모두 적용
제53조 제2호(농어가주택 등) + 제6호(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주택 소유) + 소형·저가	1	소형·저가주택 특례 미적용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 분	선 정 방 법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li> <li>■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적용</li> <li>-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추첨제로 공급</li> </ul> </li> <li>■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제주도 1년 이상 계속 거주)신청자가 우선합니다.</li> <li>■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li> <li>■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li> <li>■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행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까지 지역 우선 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 등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li> </ul> </li> <li>-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 세대수 만큼 지역 우선 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 등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li> </ul> </li> <li>■ 미 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 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li> <li>■ 예비입주자 선정 시 제출한 청약 신청서류 검토 결과 가점 점수가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 점수가 다음 순위 예비입주자의 점수 이상인 경우에만 인정되며, 더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선정이 취소됩니다.</li> <li>■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 될 경우에는 그때까지로 한다) 홈페이지(<a href="https://forena.devnexmedia.com/jejueducity/">https://forena.devnexmedia.com/jejueducity/</a>)에 공개하며, 공개 기간이 경과 한 다음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와의 관련된 개인정보는 파기 처리합니다.</li> </ul>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li> <li>■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li> <li>■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li> <li>■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li> <li>■ 일반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 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 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 될 수 없습니다.</li> </ul>

III 청약 신청

■ 신청 일정 및 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일반공급	1순위	2022.08.29.(월) 09:00~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 :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li> <li>- 스마트폰앱</li> </ul> </li> <li>■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li> </ul>
	2순위	2022.08.30.(화) 09:00~17:30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 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 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 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 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 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 자격이 일치 할 경우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1순위 해당지역 주택공급신청자는 청약 전 반드시 제주특별자치도 전입 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상 거주 확인 요망)
  - 본 아파트의 1순위 해당지역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1년 이상 거주 신청자이며,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미만 거주 신청자는 1순위 기타지역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9:00~17:30)

-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또는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모든 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 -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공고단지 청약연습"과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

-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 ② [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를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세대구성원 등록/조회」및「세대구성원 동의」
  - 청약연습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시간(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함.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분	구비사항				
일반공급	본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li> <li>■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li> <li>■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li> </ul>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50%;">인감증명 방식</th> <th style="width:50%;">본인서명확인 방식</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li> <li>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li> </ul>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li> <li>■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인 외국인 등록증</li> </ul> </td> </tr> </tbody> </table>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li> <li>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li> </ul>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li> <li>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li> <li>■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인 외국인 등록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 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 세대주 성명 및 관계 ”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주택공급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 IV 당첨자 발표

### ■ 당첨자 발표 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일반공급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2022.09.05.(월)</li> <li>■ 확인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li> <li>*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li> </ul> </li> </ul>
	2순위	

-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은행 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화가 가능하나 정보 오 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 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화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 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주택공급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또는 스마트폰앱(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을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쏠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2.09.05.(월) ~ 2022.09.14.(수) (10일간)	
인터넷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li> <li>- 스마트폰앱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li> </ul>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일반공급 청약 신청 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2.09.05.(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주택공급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 제출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일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 자격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건본주택을 방문하여 청약 내역과 대조, 검증하여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출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2.09.13.(화) ~ 2022.09.18.(일) (6일간, 10:00 ~ 16:00)</li> <li>일반공급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li> </ul>
제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본주택(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2468)</li> </ul>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서류 제출 방법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통지 예정입니다.</li> <li>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 체결할 수 없습니다.</li> <li>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li> </ul>

■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 서류(일반공급)

구 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동서류	○		신분증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li> </ul>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li> </ul>
		○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li> </ul>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li> </ul>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상세”로 발급</li> <li>미혼, 이혼, 사별, 단독세대, 배우자분리세대 등 배우자 유무 확인</li> </ul>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li> <li>현 거주지 및 거주기간 확인</li> </ul>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장애인, 국가유공자 제외)</li> <li>건본주택 방문청약 접수 시(인터넷 청약의 경우 미제출)</li> </ul>
		○	복무확인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10년 이상 군복무 기간 명시)</li> </ul>

※ 계약 구비서류(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는 접수 및 보관하지 않습니다. 계약 체결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일반공급		○	단신부임 관련 증빙서류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약 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직접(본인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에 종사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li> </ul>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3년이상 부양)</li> <li>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3년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li> </ul>
		○		피부양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만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1년이상 부양)</li> <li>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1년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li> </ul>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계 확인 및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li> <li>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상세”로 발급</li> </ul>
		○		출입국사실증명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여부 확인</li> <li>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li> </ul>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여부 확인</li> <li>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여부 확인</li> <li>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li> </ul>
		○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 점수를 산정한 경우</li> </ul>
		○		피부양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만 18세 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li> </ul>
부적격 통보 받은자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해당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유권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li> <li>미등기 주택의 경우 건축물관리대장</li> </ul>
		○	무허가건물확인서	해당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할 지자체에서 발급한 무주택임을 확인하는 공문</li> </ul>
		○	건축물철거명실신고서	해당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할 지자체에서 발급한 철거 및 멸실을 확인하는 공문</li> </ul>
		○	기타 무주택자 증명 서류	해당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택공시가격증명원, 실거래신고서, 미분양 주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li> </ul>
		○	당첨사실 소명 서류	해당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li> </ul>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li> <li>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가능(위임인 인적사항 기재)</li> </ul>
	○		신분증	대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li> </ul>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8.19.) 이후 상세 발급분에 한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 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여부,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등을 위해 모두 표기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서류 발급 시 필히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직장에서 발급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직인 날인 필요합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구 분	계약기간	계약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 (일반공급)	2022.09.23.(금) ~ 2022.09.26.(월) (4일간, 10:00 ~ 16:00)	건본주택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2468)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 실태 전산검색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

구 분	서류유형		구비서류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 시		○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		▪ 계약금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아파트 계약용/본인발급분)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 재외동포 : 국내거소 신고증 사본 1부 및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부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
제3자 대리인 계약 위임 시	○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아파트계약 위임용/본인발급분) 및 인감도장
	○		▪ 대리인 신분증 사본 및 인장 또는 대리인 서명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 처리

※ 상기 모든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8.19.)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 분	금융기관명	납부계좌	예금주
분양대금 납부계좌	MG 새마을금고	9002 - 2000 - 0874 - 3	(주)하나자산신탁

- ※ 상기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 지정된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 입금 시 반드시 동·호수 및 계약자명을 기재 (예:101동 101호 홍길동의 경우, 서명란에 "1010101홍길동"이라고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 건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및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합니다.
- ※ 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 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 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자의 청약관련 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됩니다.
- 사업주체에서 당첨자에 한하여 세대주, 거주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와 다르게 당첨되어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공급계약은 취소됩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 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② 계약체결 후에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합니다.[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음]
    - \*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주택소유현황 등)을 허위 또는 착오 기재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며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하며,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적격 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청약접수 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아파트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 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 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행위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 된 경우에는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 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 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 서류로 등기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이 되며, 공급계약 체결 시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납부하기로 합니다. 또한 분양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거 납부, 인지 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가산세)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세액 :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 + 프리미엄)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납부세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 납부방법 : 정부수입인지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www.e-revenuestamp.or.kr>)에서 구매 후 출력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거나, 우체국 또는 은행에서 구매 가능함.

※ 정부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 뿐만 아니라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를 대행하는 법무사도 구매하여 첨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전매)계약서에 정부수입인지를 첨부하지 않으면 납부기간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100%, 6개월 이내 200%, 6개월 초과 300%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 납부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http://hometax.go.kr)) 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서(소비 담당)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제58조 3항에 의거 당첨일로부터 수도권은 1년, 수도권 외의 지역은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위촉지역은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공급 신청하려는 주택의 지역 기준)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 동일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동일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 계약자 대출안내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용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 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금융관련 정부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 금융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 본 아파트는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부정책, 대출 금융기관의 여신관리 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적격대출 시 중도금 대출이자와 관련하여서는 중도금 무이자를 적용하며, 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따라 중도금 무이자자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직전까지는 시행위탁자가 계약자를 대신하여 납부하고, 이후 발생하는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기로 한다. 또한 계약자가 잔금 납부 시 입주가 가능하며, 입주지정기간 내 미납 시에는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자, 대출규제 대상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됨)하며, 이 경우 무이자 조건에 대한 요구를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 협약 등에 의거하여 사업주체는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분양계약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금융관련 정부정책, 대출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을 감안한 대출(이하 "적격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 취급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 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금융관련 정부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별도로 통보할 의무가 없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분양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분양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무이자 조건에 대한 요구를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사업주체 의사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 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율에 따른 중도금 납부 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분양권 전매 요청 시 해당 주택의 사업주체 및 대출 취급기관은 양수인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기관 또는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양수인이 신용등급 등의 제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금융기관에서 중도금을 대출 받았을 경우 준공 후 소유권 이전등기 및 대출은행의 1순위(제2금융권에서 추가대출을 받은 경우 제2금융기관의 2순위 포함) 근저당 설정 시까지 위 표시 부동산에 임대차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금액은 준공 후 후취담보 취득 시 담보금액 부족 등의 사유로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주택법」제48조의2 제1항,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체는 앞으로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실입주월을 통보하고, 실입주 1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각각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입주지정기간은 500세대 이상 단지는 최소 60일 이상, 500세대 미만 단지는 45일 이상 제공해야 합니다.
- 도장공사 • 도배공사 • 가구공사 • 타일공사 • 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기구 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기간 시작일 45일전까지 2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사전방문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전방문시작일 1개월 전까지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입주 예정월 : 2025년 1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

-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체는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월을,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1개월전에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500세대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는 입주지정기간을 45일 이상,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는 60일 이상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정부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지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납입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부대복리시설 : 지하주차장, 작은도서관, 관리사무소,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게스트하우스, 경로당, 어린이집, 돌봄센터, 어린이 놀이터 등이 있습니다.

- 주민운동시설은 골프트레이닝센터(타석7개), 스크린골프(3개소), 피트니스, GX룸, 강사실, 락커, 음수공간, 공용 및 장애인화장실로 구성됩니다.

■ 벌칙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분의 청약 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 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 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공급 질서 교란자(알선자도 포함) 및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는 적발한 날로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됩니다.
- 본 아파트는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의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하자판정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 관리법」제36조,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7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학교 배치 등 관련분야 유의사항

- 금회 공동주택 사업예정지의 통학구역은 보성초등학교입니다. (관계기관의 요청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 발코니 확장

## ▣ 발코니 확장 공급금액 및 납부방법

(단위: m<sup>2</sup>, 원 / 부가가치세 포함)

타입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계약시	입주지정일	
84	16,100,000	1,610,000	14,490,000	거실, 주방, 침실
99A	18,900,000	1,890,000	17,010,000	
99B	19,000,000	1,900,000	17,100,000	
99C	18,900,000	1,890,000	17,010,000	
99D	19,000,000	1,900,000	17,100,000	
120	23,200,000	2,320,000	20,880,000	
125	23,900,000	2,390,000	21,510,000	
136	25,900,000	2,590,000	23,310,000	
137	26,300,000	2,630,000	23,670,000	
210	40,400,000	4,040,000	36,360,000	

## ▣ 발코니 확장 유의사항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이므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별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나, 비확장형 선택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평면구성 및 제품품목이 변경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외부 창호류, 세대내 목창호류, 가구류, 유리, 석재, 타일,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발코니의 면적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산출되는 면적으로 실사용 면적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 확장비용은 분양가와 별도로 시공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이후라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는 발코니 확장을 고려한 설계로 비확장형 선택 시 일부 세대의 사용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는 발코니 확장 선택 시 상부세대가 비확장형인 경우 커튼박스의 깊이가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설치될 수 있습니다.(단열재 설치로 인하여 커튼 박스의 깊이 축소됨)
- 단위세대 주방 상판, 주방가구 등 마감재가 확장 또는 비확장형 여부에 따라 상이하오니 사전에 확인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가구류는 확장 또는 비확장형 여부에 따라 설치 위치, 수량 및 디자인이 상이하오니 사전에 확인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제공품목, 추가선택품목, 전시품목 등이 혼합되어 있고, 본 시공 시에는 계약 내용에 따라 설치될 예정입니다.
- 추가선택품목(설치사항, 규격), 견본주택의 연출용(전시품목 등) 및 공간 확보(주방, 가전제품 사용 공간 등) 부분 등에 대해 계약자는 사전에 견본주택을 충분히 확인한 다음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커튼, 침대, 소파, 책상, 식탁, 전시조명, 거실장 등), 디스플레이 가전제품(냉장고류, 세탁기류, TV), 기타 전사용품 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 시 제공되지 않으며(분양가 미포함),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등 일체)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세대내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고, 계약 및 입주 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VR 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추가선택품목과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사용품이 포함된 VR 동영상이므로 제품품목은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견본주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외부 샷시는 층, 향에 의한 바람의 영향 차이로 유리의 강도 및 두께 또는 재질의 안정성을 위해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풍압테스트 결과 및 안전상 등의 이유로 세대별, 각 실별(실별 내에서도 차등가능) 유리두께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발코니에 전용면적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세대가 있으며, 확장면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 유념하시기 바라며, 세부사항은 견본주택 현장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확장 선택 시 확장부위에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샷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기적인 실내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발코니확장 선택 시 확장 면적에 초과 발코니 면적 중 비확장 부분과 공유되는 부분의 면적이 일부 포함되오니 양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현장의 외부 마감은 입면 CG와 설계도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피난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 및 난방 부담금 등은 입주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부담 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는 관련 법령에 맞게 시공되어야 하며,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해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사업주체 시공분 시설은 적절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반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을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고,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에는 각 세대의 가스배관 및 발코니에 필요 시 선풍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시공되며, 발코니 확장 선택 시 가구를 설치하여 처리하더라도 미관상 조잡할 수 있으며,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으로 인하여 생기는 침실(거실, 주방) 부분에 가구 배치로 인하여 창문을 통해 어린이들이 떨어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가구 배치 시 창문과 이격 또는 난간 높이 확보를 통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비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 분	금융기관명	납부계좌	예금주
발코니 확장 공사비	MG 새마을금고	9002 - 2000 - 0875 - 7	(주)하나자산신탁

- ※ 입금 시 반드시 동·호수 및 계약자명을 기재(예:101동 101호 홍길동의 경우, 서명란에 "1010101홍길동"이라고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인정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계좌는 발코니 확장 납부계좌로서 아파트 공급대금 계좌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 바랍니다.
- ※ 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및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합니다.
- ※ 타입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반드시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

▣ 시스템 특화 옵션(유상)

(단위: 원 / 부가가치세 포함)

타입	구분	금액	비고
84㎡	고급형 시스템 선반(드레스룸)	1,930,000	안방 드레스룸
	고급형 시스템 선반(알파룸)	2,370,000	알파룸

	시스템 에어컨	선택 1	에어컨 기본형	4,400,000	거실 + 주방 + 안방
		선택 2	에어컨 기본형 + 공기청정형	5,050,000	거실 + 주방 + 안방
		선택 3	에어컨(전실) 기본형	8,320,000	전실 (알파룸 포함)
		선택 4	에어컨(전실) 기본형 + 공기청정형	9,620,000	전실 (알파룸 포함)
		선택 5	에어컨(전실_알파룸 제외) 기본형	7,270,000	전실 (알파룸 제외)
		선택 6	에어컨(전실_알파룸제외) 기본형 + 공기청정형	8,360,000	전실 (알파룸 제외)
			제습기	800,000	코스텔 (CDD-600B)
		냉매배관	1,890,000	침실2, 침실3	
		실외기실 전동루버	540,000	자동개폐 기능 전동루버	
		전동 커튼레일	1,820,000	전동 커튼레일	
타입	구분			금액	내용
99㎡A	시스템 가구	고급형 시스템 선반(드레스룸)		2,090,000	안방 드레스룸
	시스템 에어컨	선택 1	에어컨 기본형	4,940,000	거실 + 주방 + 안방
		선택 2	에어컨 기본형 + 공기청정형	5,630,000	거실 + 주방 + 안방
		선택 3	에어컨(전실) 기본형	8,920,000	전실 (거실+주방+안방+침실2+침실3+침실4)
		선택 4	에어컨(전실) 기본형 + 공기청정형	10,240,000	전실 (거실+주방+안방+침실2+침실3+침실4)
			제습기	800,000	코스텔 (CDD-600B)
			냉매배관	1,960,000	침실2, 침실3
		실외기실 전동루버	540,000	자동개폐 기능 전동루버	
		전동 커튼레일	1,820,000	전동 커튼레일	
타입	구분			금액	내용
99㎡B	시스템 가구	고급형 시스템 선반(드레스룸)		1,090,000	안방 드레스룸
	시스템 에어컨	선택 1	에어컨 기본형	5,150,000	거실 + 주방 + 안방
		선택 2	에어컨 기본형 + 공기청정형	5,840,000	거실 + 주방 + 안방
		선택 3	에어컨(전실) 기본형	8,060,000	전실 (거실+주방+안방+침실2+침실3)
		선택 4	에어컨(전실) 기본형 + 공기청정형	9,190,000	전실 (거실+주방+안방+침실2+침실3)
			제습기	800,000	코스텔 (CDD-600B)
			냉매배관	1,400,000	침실2, 침실3
		실외기실 전동루버	540,000	자동개폐 기능 전동루버	
		전동 커튼레일	2,100,000	전동 커튼레일	
타입	구분			금액	내용
99㎡C	시스템 가구	고급형 시스템 선반(드레스룸)		2,090,000	안방 드레스룸
	시스템 에어컨	선택 1	에어컨 기본형	4,930,000	거실 + 주방 + 안방
		선택 2	에어컨 기본형 + 공기청정형	5,600,000	거실 + 주방 + 안방
		선택 3	에어컨(전실) 기본형	7,870,000	전실 (거실+주방+안방+침실2+침실3)
		선택 4	에어컨(전실) 기본형 + 공기청정형	8,980,000	전실 (거실+주방+안방+침실2+침실3)
			제습기	800,000	코스텔 (CDD-600B)
			냉매배관	1,380,000	침실2, 침실3
		실외기실 전동루버	540,000	자동개폐 기능 전동루버	
		전동 커튼레일	1,820,000	전동 커튼레일	
타입	구분			금액	내용
99㎡D	시스템 가구	고급형 시스템 선반(드레스룸)		1,100,000	안방 드레스룸
	시스템 에어컨	선택 1	에어컨 기본형	5,060,000	거실 + 주방 + 안방
		선택 2	에어컨 기본형 + 공기청정형	5,730,000	거실 + 주방 + 안방
		선택 3	에어컨(전실) 기본형	8,080,000	전실 (거실+주방+안방+침실2+침실3)
		선택 4	에어컨(전실) 기본형 + 공기청정형	9,190,000	전실 (거실+주방+안방+침실2+침실3)
			제습기	800,000	코스텔 (CDD-600B)
		냉매배관	1,440,000	침실2, 침실3	



			실외기실 전동루버	540,000	자동개폐 기능 전동루버
			전동 커튼레일	2,100,000	전동 커튼레일
타입			구분	금액	비고
120㎡	시스템 가구		고급형 시스템 선반(드레스룸)	1,930,000	안방 드레스룸
	시스템 에어컨	선택 1	에어컨 기본형	4,370,000	거실 + 주방 + 침실1
		선택 2	에어컨 기본형 + 공기청정형	5,040,000	거실 + 주방 + 침실1
		선택 3	에어컨(전실) 기본형	12,390,000	전실 (알파룸 포함)
		선택 4	에어컨(전실) 공기청정형	14,120,000	전실 (알파룸 포함)
		선택 5	에어컨(전실_알파룸 제외) 기본형	11,370,000	전실 (알파룸 제외)
		선택 6	에어컨(전실_알파룸 제외) 기본형 + 공기청정형	12,890,000	전실 (알파룸 제외)
			제습기	800,000	코스텔 (CDD-600B)
			냉매배관	1,960,000	침실2, 침실3
			실외기실 전동루버	540,000	자동개폐 기능 전동루버
		전동 커튼레일	2,100,000	전동 커튼레일	
타입			구분	금액	비고
125㎡	시스템 가구		고급형 시스템 선반(드레스룸)	1,750,000	안방 드레스룸
	시스템 에어컨	선택 1	에어컨 기본형	5,400,000	거실 + 주방 + 안방
		선택 2	에어컨 기본형 + 공기청정형	6,100,000	거실 + 주방 + 안방
		선택 3	에어컨(전실) 기본형	10,520,000	전실 (거실+주방+안방+침실2+침실3+침실4)
		선택 4	에어컨(전실) 기본형 + 공기청정형	11,870,000	전실 (거실+주방+안방+침실2+침실3+침실4)
				제습기	800,000
			냉매배관	1,960,000	침실2, 침실3
			실외기실 전동루버	540,000	자동개폐 기능 전동루버
			전동 커튼레일	2,100,000	전동 커튼레일
	타입			구분	금액
136㎡	시스템 가구		고급형 시스템 선반(드레스룸)	1,750,000	안방 드레스룸
	시스템 에어컨	선택 1	에어컨 기본형	4,960,000	거실 + 주방 + 안방
		선택 2	에어컨 기본형 + 공기청정형	5,620,000	거실 + 주방 + 안방
		선택 3	에어컨(전실) 기본형	10,160,000	전실 (거실+주방+안방+침실2+침실3+알파룸)
		선택 4	에어컨(전실) 기본형 + 공기청정형	11,480,000	전실 (거실+주방+안방+침실2+침실3+알파룸)
		선택 5	에어컨(전실_알파룸 제외) 기본형	8,780,000	전실 (알파룸 제외)
		선택 6	에어컨(전실_알파룸 제외) 기본형 + 공기청정형	9,890,000	전실 (알파룸 제외)
			제습기	800,000	코스텔 (CDD-600B)
			냉매배관	1,960,000	침실2, 침실3
			실외기실 전동루버	540,000	자동개폐 기능 전동루버
		전동 커튼레일	1,960,000	전동 커튼레일	
타입			구분	금액	비고
137㎡	시스템 가구		고급형 시스템 선반(드레스룸)	1,090,000	안방 드레스룸
	시스템 에어컨	선택 1	에어컨 기본형	5,080,000	거실 + 주방 + 안방
		선택 2	에어컨 기본형 + 공기청정형	5,760,000	거실 + 주방 + 안방
		선택 3	에어컨(전실) 기본형	11,580,000	전실 (거실+주방+안방+침실2+침실3+침실4)
		선택 4	에어컨(전실) 기본형 + 공기청정형	13,120,000	전실 (거실+주방+안방+침실2+침실3+침실4)
			제습기	800,000	코스텔 (CDD-600B)
			냉매배관	1,440,000	침실2, 침실3
			실외기실 전동루버	540,000	자동개폐 기능 전동루버
			전동 커튼레일	2,100,000	전동 커튼레일
	타입			구분	금액
210㎡	시스템	선택 1	에어컨 기본형	5,560,000	거실 + 주방 + 안방

	에어컨	선택 2	에어컨 기본형 + 공기청정형	6,260,000	거실 + 주방 + 안방
		선택 3	에어컨(전실) 기본형	14,110,000	전실 (거실+주방+안방+침실2+침실3+침실4+침실5+미니거실)
		선택 4	에어컨(전실) 기본형 + 공기청정형	15,910,000	전실 (거실+주방+안방+침실2+침실3+침실4+침실5+미니거실)
			냉매배관	2,680,000	침실2 + 침실3
		실외기실 전동루버	540,000	자동개폐 기능 전동루버	
		전동 커튼레일	2,180,000	전동 커튼레일	

■ 마감재 특화 옵션(유상)

(단위: 원 / 부가가치세 포함)

타입	구분			금액	비고
84㎡	마감 특화 옵션	신발장 가구형 조명		3,310,000	신발장 가구형 조명
		직부형 간접조명			복도 벽면 상부 + 거실 아트월 상부
		벽체 시트 판넬			복도 + 거실 벽면 (지정구간)
	도어	현관 중문	3연동 슬라이딩(자동형)	2,800,000	-
			3연동 슬라이딩(수동형)	2,080,000	-
	바닥 마감	기본형		-	강마루
옵션 1		타일	2,580,000	-	
	옵션 2	원목마루	10,000,000	-	
99㎡A	마감 특화 옵션	신발장 가구형 조명		3,465,000	신발장 중앙 + 하부 가구형 조명
		직부형 간접조명			복도 벽면 상부 + 거실 아트월 상부
		벽체 시트 판넬			복도 + 거실 벽면 (지정구간)
	도어	현관 중문	3연동 슬라이딩(자동형)	2,790,000	-
			3연동 슬라이딩(수동형)	2,080,000	-
	바닥옵션	침실 4 유리도어		4,260,000	AL.슬라이딩도어 + 천장매립 사각등 + 주방바닥재연결
기본형		-	강마루		
	옵션 1	타일	3,120,000	-	
	옵션 2	원목마루	12,300,000	-	
99㎡B	마감 특화 옵션	신발장 가구형 조명		3,475,000	신발장 중앙 + 하부 가구형 조명
		직부형 간접조명			복도 벽면 상부 + 거실 아트월 상부
		벽체 시트 판넬			복도 + 거실 벽면 (지정구간)
	도어	현관 중문	3연동 슬라이딩(자동형)	2,790,000	-
			3연동 슬라이딩(수동형)	2,080,000	-
	바닥옵션	기본형		-	강마루
옵션 1		타일	2,930,000	-	
	옵션 2	원목마루	11,400,000	-	
99㎡C	마감 특화 옵션	신발장 가구형 조명		3,240,000	신발장 중앙 + 하부 가구형 조명
		직부형 간접조명			복도 벽면 상부 + 거실 아트월 상부
		벽체 시트 판넬			복도 + 거실 벽면 (지정구간)
	도어	현관 중문	3연동 슬라이딩(자동형)	2,790,000	-
			3연동 슬라이딩(수동형)	2,080,000	-
	바닥옵션	기본형		-	강마루
옵션 1		타일	2,890,000	-	
	옵션 2	원목마루	11,600,000	-	
타입	구분			금액	비고

99㎡D	마감 특화 옵션	신발장 가구형 조명		4,945,000	신발장 중앙 + 하부 가구형 조명 복도 벽면 상부 + 거실 아트월 상부 복도 + 거실 벽면 (지정구간)	
		직부형 간접조명				
		벽체 시트 판넬				
	도어	현관 중문	3연동 슬라이딩(자동형)	2,790,000	-	
			3연동 슬라이딩(수동형)	2,080,000	-	
바닥옵션	기본형			강마루		
	옵션 1	타일	2,930,000	-		
	옵션 2	원목마루	11,500,000	-		
타입	구분		금액	비고		
120㎡	마감 특화 옵션	신발장 가구형 조명		4,148,000	신발장 하부 복도 벽면 상부+ 거실 아트월 상부 복도 + 거실 벽면 (지정구간)	
		직부형 간접조명				
		벽체 시트 판넬				
	도어	현관 중문	3연동 슬라이딩(자동형)	2,790,000	-	
			3연동 슬라이딩(수동형)	2,080,000	-	
바닥옵션	기본형		-	강마루		
	옵션 1	타일	2,420,000	-		
	옵션 2	원목마루	10,400,000	-		
타입	구분		금액	비고		
125㎡	마감 특화 옵션	신발장 가구형 조명		3,817,000	신발장 중앙 + 하부 가구형 조명 복도 벽면 상부 + 거실 아트월 상부 복도 벽면	
		직부형 간접조명				
		벽체 시트 판넬				
	도어	현관 중문	3연동 슬라이딩(자동형)	2,820,000	-	
			3연동 슬라이딩(수동형)	2,110,000	-	
바닥옵션	기본형		-	강마루		
	옵션 1	타일	3,440,000	-		
	옵션 2	원목마루	15,400,000	-		
타입	구분		금액	비고		
136㎡	마감 특화 옵션	신발장 가구형 조명		4,630,000	신발장 중앙 + 하부 가구형 조명 복도 벽면 상부 + 거실 아트월 상부 복도 벽면 + 거실 벽면 (지정구간)	
		직부형 간접조명				
		벽체 시트 판넬				
	도어	주방 장식장 도어		무상	슬리드 도어	
		현관 중문	3연동 슬라이딩(자동형)		무상	유리도어
			3연동 슬라이딩(수동형)		2,840,000	-
			AL. 유리도어		2,140,000	-
바닥옵션	기본형		1,580,000	알파를 유리도어		
	옵션 1	타일	-	강마루		
	옵션 2	원목마루	3,660,000	-		
타입	구분		금액	비고		
137㎡	마감 특화 옵션	신발장 가구형 조명		4,505,000	신발장 중앙 + 하부 가구형 조명 복도 벽면 상부 + 거실 아트월 상부 복도 벽면 + 거실 벽면 (지정구간)	
		직부형 간접조명				
		벽체 시트 판넬				
	도어	현관 중문	3연동 슬라이딩(자동형)	2,790,000	-	
			3연동 슬라이딩(수동형)	2,080,000	-	
바닥옵션	무상선택		-	강마루 (전실)		
	옵션 1	타일	2,930,000	-		
	옵션 2	원목마루	11,400,000	-		
타입	구분		금액	비고		

210㎡	마감 특화 옵션	직부형 간접조명	2,200,000	복도 벽면 상부 + 아트월 상부
		AL.슬라이딩도어	1,010,000	침실1 드레스룸
	바닥옵션	무상선택 1	-	침실5 드레스룸
		무상선택 2	-	전실 강마루
		바닥 옵션 2	24,100,000	포셀린 타일 + 각실 강마루 전실 원목마루

▣ 주방·가전 특화 옵션(유상)

(단위: 원 / 부가가치세 포함)

타입	구분		금액	비고
84㎡	주방 특화 옵션	세라믹 상판 및 벽판넬, 고급 싱크볼	4,980,000	세라믹 타일(ATLASPLAN KONE MIX) 싱크볼(백조HSQ5R9012A)
		주방 상부장 가구조명		-
	가전	주방 장식장	2,430,000	-
		3구 인덕션 쿡탑	840,000	LG전자 (BEI3GTBI)
		식기세척기	1,160,000	LG전자 (DIB22S)
		오브제 컨버터블 김치, 냉장, 냉동고	3,850,000	LG전자 (BC1L1AA1,BC1F1AA1,BC1K1AA1)
		비데 일체형 양변기 (공용욕실)	315,000	대림B&CO (CL358)
실링팬	900,000	루씨에어 레이더플러스		
타입	구분		금액	비고
99㎡A	주방 특화 옵션	세라믹 상판 및 벽판넬, 고급 싱크볼	2,425,000	세라믹 타일(ATLASPLAN KONE MIX) 싱크볼( 백조 HSQ5R9012A)
		주방 상부장 가구조명		-
	가전	3구 인덕션 쿡탑	840,000	LG전자 (BEI3GTBI)
		빌트인 식기세척기	1,160,000	LG전자 (DIB22S)
		오브제 컨버터블 김치, 냉장, 냉동고	3,840,000	LG전자 (BC1L1AA1,BC1F1AA1,BC1K1AA1)
		비데 일체형 양변기 (공용욕실)	315,000	대림B&CO (CL358)
		실링팬	900,000	루씨에어 레이더플러스
타입	구분		금액	비고
99㎡B	주방 특화 옵션	세라믹 상판, 고급 싱크볼	1,680,000	세라믹 타일(ATLASPLAN KONE MIX) 싱크볼(백조HSQ5R9012A)
		3구 인덕션 쿡탑		840,000
	가전	빌트인 식기세척기	1,160,000	LG전자 (DIB22S)
		오브제 컨버터블 김치, 냉장, 냉동고	3,860,000	LG전자 (BC1L1AA1,BC1F1AA1,BC1K1AA1)
		비데 일체형 양변기 (공용욕실)	315,000	대림B&CO (CL358)
		실링팬	900,000	루씨에어 레이더플러스
타입	구분		금액	비고
99㎡C	주방 특화 옵션	세라믹 상판 및 벽판넬, 고급 싱크볼	2,420,000	세라믹 타일(ATLASPLAN KONE MIX) 싱크볼(백조HSQ5R9012A)
		주방 상부장 가구조명		-
	가전	3구 인덕션 쿡탑	840,000	LG전자 (BEI3GTBI)
		빌트인 식기세척기	1,160,000	LG전자 (DIB22S)
		오브제 컨버터블 김치, 냉장, 냉동고	3,840,000	LG전자 (BC1L1AA1,BC1F1AA1,BC1K1AA1)
		비데 일체형 양변기 (공용욕실)	310,000	대림B&CO (CL358)
		실링팬	900,000	루씨에어 레이더플러스
타입	구분		금액	비고
99㎡D	주방 특화 옵션	세라믹 상판, 고급 싱크볼	1,680,000	세라믹 타일 (ATLASPLAN KONE MIX) 싱크볼(백조HSQ5R9012A)
	가전	3구 인덕션 쿡탑	840,000	LG전자 (BEI3GTBI)

		빌트인 식기세척기	1,160,000	LG전자 (DIB22S)
		오브제 컨버터블 김치, 냉장, 냉동고	3,860,000	LG전자 (BC1L1AA1,BC1F1AA1,BC1K1AA1)
		비데 일체형 양변기 (공용욕실)	315,000	대림B&CO (CL358)
		씰링헨	900,000	루씨에어 레이더플러스
타입		구분	금액	비고
120㎡	주방 특화 옵션	세라믹 상판 및 벽판넬, 고급 싱크볼	4,728,000	세라믹 타일(ATLASPLAN KONE MIX) 싱크볼(백조HSQ5R9012A)
		주방 상부장 가구조명	-	-
	가전	3구 인덕션 쿡탑	840,000	LG전자 (BEI3GTBI)
		빌트인 식기세척기	1,160,000	LG전자 (DIB22S)
		오브제 컨버터블 김치, 냉장, 냉동고	3,850,000	LG전자 (BC1L1AA1, BC1F1AA1, BC1K1AA1)
		비데 일체형 양변기 (공용욕실)	315,000	대림B&CO (CL358)
	씰링헨	900,000	루씨에어 레이더플러스	
타입		구분	금액	비고
125㎡	주방 특화 옵션	세라믹 상판, 고급 싱크볼	1,160,000	세라믹 타일 (ATLASPLAN KONE MIX) 싱크볼(백조HSQ5R9012A)
		3구 인덕션 쿡탑	840,000	LG전자 (BEI3GTBI)
	가전	빌트인 식기세척기	1,160,000	LG전자 (DIB22S)
		오브제 컨버터블 김치, 냉장, 냉동고	3,900,000	LG전자 (BC1L1AA1, BC1F1AA1, BC1K1AA1)
		비데 일체형 양변기 (공용욕실)	315,000	대림B&CO (CL358)
		씰링헨	900,000	루씨에어 레이더플러스
타입		구분	금액	비고
136㎡	주방 특화 옵션	세라믹 상판 및 벽판넬, 고급 싱크볼	1,320,000	세라믹 타일(ATLASPLAN KONE MIX) 싱크볼(백조HSQ5R9012A)
		주방 상부장 가구조명	-	-
	가전	3구 인덕션 쿡탑	840,000	LG전자 (BEI3GTBI)
		빌트인 식기세척기	1,160,000	LG전자 (DIB22S)
		오브제 컨버터블 김치, 냉장, 냉동고	3,830,000	LG전자 (BC1L1AA1,BC1F1AA1,BC1K1AA1)
		비데 일체형 양변기 (공용욕실)	315,000	대림B&CO (CL358)
	씰링헨	900,000	루씨에어 레이더플러스	
타입		구분	금액	비고
137㎡	주방 특화 옵션	세라믹 상판, 고급 싱크볼	1,650,000	세라믹 타일(ATLASPLAN KONE MIX) 싱크볼(백조HSQ5R9012A)
		3구 인덕션 쿡탑	840,000	LG전자 (BEI3GTBI)
	가전	빌트인 식기세척기	1,160,000	LG전자 (DIB22S)
		오브제 컨버터블 김치, 냉장, 냉동고	3,860,000	LG전자 (BC1L1AA1,BC1F1AA1,BC1K1AA1)
		비데 일체형 양변기 (공용욕실)	315,000	대림B&CO (CL358)
		씰링헨	900,000	루씨에어 레이더플러스
타입		구분	금액	비고
210㎡	가전	3구 인덕션 쿡탑	930,000	LG전자 (BEI3GTBI)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	납부계좌	예금주	비고
선택품목	우리은행	1005 - 804 -366883	(주)한화건설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예) 101동 101호 홍길동 : 101101홍길동

▣ 추가 선택품목 유의사항

- 시스템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 시스템 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시스템에어컨 신청세대는 기본제공 3개소(거실, 주방, 안방)인 매립형 냉매배관 및 에어컨 실내기용 전기콘센트 설치공사를 제외하며, 시스템에어컨 판매가는 해당실의 냉매배관 및 전기콘센트 설치공사비를 감액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추가로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에어컨 배관으로 인한 환기 디퓨저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장 배관 위치,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 부위의 천장 높이 등이 이동(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 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제조사의 도산 혹은 설계상의 이유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실내기는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일부 제외 및 추가가 불가하며, 이는 공기청정형 선택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옵션선택에 따라 각 세대 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고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을 옵션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거실, 안방 냉매배관 및 실내기용 콘센트만 시공 됩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 위치는 계약 체결시 배포되는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별도의 무선 리모컨을 제공합니다.
- 시스템에어컨 부분선택(안방, 거실) 세대 및 냉매배관 제공(안방, 거실) 세대만 냉매배관 옵션 선택(거실, 안방 제외 방 선택)이 가능합니다.(단, 복층형 세대의 복층은 냉매배관 옵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세부내역은 계약체결 시 배포되는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후 개별로 에어컨을 추가 설치 할 경우, 시스템에어컨 성능이 저하 또는 동작 불능이 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복층형 세대의 경우 거실 에어컨이 거실 천정고로 인하여 복도에 설치됩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하나신탁과 무관하며, 시공사 (※)한화건설과 별도 계약을 통해 진행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계약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 선택품목에 대한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발코니 확장 입금계좌와 상이하므로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은 계약 당일 상기의 납부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없음)
- 계약 시 상기의 계약로 입금 후 견본주택에 납부영수증(입금증, 이체증)제출 [견본주택 내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불가, 신용카드 결제 불가]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시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유상옵션 선택품목 계약내용 및 계약금 및 잔금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시공사가 적의 조정한 별매품에 준합니다.
- 상기 추가 선택옵션 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카달로그 상 표기되는 각 실의 명칭(거실, 주방, 안방, 침실2, 3, 4 등)은 카달로그 기준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위치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옵션 품목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선택옵션 공사의 계약내용 및 계약금, 잔금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추가 선택옵션 공사계약서에 준하며, 사업주체는 공사금액 납부 약정일을 계약자에게 별도로 통보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 납부예정일이 변동(연기 등) 될 경우 시공사는 계약자에게 문자, 우편물 등으로 통보시 고지 된 것으로 합니다.(수신여부에 대한 책임 없음)
- 입금 시 반드시 동·호수 및 계약자명을 기재(예:101동 101호 홍길동의 경우, 서명란에 "1010101홍길동"이라고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상기 계약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선택품목 공사비는 인정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계약은 추가선택품목 공사비 납부계좌로서 아파트 공급대금 계좌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및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합니다.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지정된 계약금,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전동커튼 전용 레일 및 모터가 제공되며, 커튼은 별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 계약 일정은 아파트 공급계약 일정 또는 일정기간 정하여 체결할 예정입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하나자산신탁과 무관하며, 시공사 (※)한화건설과 별도 계약을 통해 진행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제4조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입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여부에 대하여 입주자모집공고 시 입주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추가 선택품목의 구입 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 외 추가 선택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발코니확장 선택 시 계약 가능하며, 품목별 선택 계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발코니 비확장 세대는 선택 불가합니다.
- 계약일 이후 추가 선택품목을 계약하고자 할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중도금대출자서기간등) 추가 선택품목 계약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시공상의 사유로 불가합니다.(아파트 공급계약 시 계약한 추가선택품목의 취소는 불가)
- 추가 선택품목은 본 아파트의 디자인 컨셉에 따른 품목으로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를 요구 할 수 없으니 타사 및 기타 시중 품목과 반드시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지정, 마감재 색상, 디자인, 조명 등을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조건(납부금액 또는 납부일정, 계약체결 일정 등)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아파트 공급계약과는 별도 계약사항이며, 아파트 공급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해제 또는 취소됩니다.
- 추가 선택품목 선택 시 사업주체가 선정한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허가도면, 홍보물 등의 가구 및 가구표현 등이 견본주택과 상이할 경우 견본주택 및 계약 시 선택한 사항이 우선하므로 반드시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미건립세대인 99B,99C,99D,120,125,137,210 타입은 견본주택의 84,99A,136 타입과 같은 마감재의 사양으로 진행되며, 평면형태 및 공간크기에 따라 마감 및 가구 구성, 가구 길이, 가구의 입면 및 도어 개폐 방향, 가구/마감재 색상의 조합, 거실 우물천장 및 커튼박스의 크기 등이 상이하며, 분양자료(VR, 이형모형, 분양 카달로그 등)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 미선택 시 기본형으로 설치되며 옵션금액 산정시 기본형에 해당하는 비용은 감액하여 반영된 것입니다.
- 씰링웬 미선택시 해당 부위에 전원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 선택에 따라 타입, 수량, 위치 등이 기본형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VIII 기타

※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안내사항 및 유의사항
- ▣ 공통 안내사항

구분	내용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 사업은 2022년 07월 19일에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득한 사업으로 일부 규정은 최초 사업승인 당시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li> <li>- 도면은 견본주택에 비치되어 있으며, 자재목록 및 동영상은 분양 홈페이지(<a href="https://forena.devnexmedia.com/jejueducity/">https://forena.devnexmedia.com/jejueducity/</a>)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li> <li>- 주택건설지역 인근 기반시설(도로, 녹지, 공원, 학교, 상/하수, 전기/난방, 저류시설 등) 및 각종 개발계획은 사업주체나 시공사가 아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역개발공사(또는 LH공사) 등이 설치하거나 추진하는 사항으로 사업추진 중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입주 지연과 생활 불편 및 시세 하락 등의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 사업주체나 시공사는 책임이 없으므로 현재 진행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li> <li>-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향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li> <li>-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li> <li>-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로 인한 차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li> <li>- 준공 시 경계(확정)측량 후 대지면적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라 계약면적상의 대지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일부 세대 지붕층 및 옥탑층, 상가 지붕층에 조경공간(식재 또는 인조잔디), 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등, 야간경관용 조명, 공청 및 위성안테나, 피뢰설비, 실외기, 태양광 발전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에는 자전거 보관소, 생활폐기물보관시설,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DRY AREA(채광,환기,방습 따위를 위하여 지하에서 지상으로 낸 통풍구) 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계약 시 위치를 확인 해야하며 설치결과에 따라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단, 위치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사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계약세대가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다를 수 있으며, 마감재 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동 조합으로 인한 요철 및 입면디자인으로 인한 장식으로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일부 침해될 수 있습니다.</li> </ul>

- 마감재의 사양은 타입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에서 분양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인지하신 후 분양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측정결과를 주민 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 입주 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단지 외부의 녹지, 근린공원, 학교 등 공공시설물 설립 및 완공계획 등은 자치단체 일정에 의하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는 무관합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지하주차장, 작은도서관, 관리사무소, 경비실, 다함께 돌봄센터, 경로당,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게스트하우스, 어린이놀이터 등이 있습니다. 사용상의 편리성과 디자인의 개선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용도 변경 및 통합, 실내구획, 위치 및 외관과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용도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주차공간을 이용함에 있어 모든 이용자 상호간에 불편을 야기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주차문제에 관한 다툼이 발생되어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리사무소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합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시공사, 금융기관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공개 후 타 공동주택의 마감사양, 가전제품, 공용시설, 조정시설 등을 본 아파트와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승인도서에 적용된 사항 이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가전제품, 공용시설, 조정시설 등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주변지역 공동주택과 충분히 비교하신 후 청약(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한 TYPE의 단위세대도 발코니 세대간 조건 및 발코니 변화에 따라 서비스 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외벽 및 창호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일 동·호수 배정 시 동일 주택형이나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기부채납 도로 등 기반시설은 실시계획인가 등 인·허가청과의 협의에 따라 계획안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건축 구조물 외부에 BI 및 경관 조명이 설치되며, 계약 전 이점 양지하시고 계약하기 바랍니다.
- 입주 및 이사 시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능한 라인이 있을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무연분묘의 개장허가를 득한 사업으로 사업지내 7개 필지는 사업면적에서 제외 되었으며, 사전에 위치를 충분히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①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②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 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③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 사업지 내부의 묘지는 단순히 지적상의 묘지이며, 추후 묘지가 대지면적에 편입될 수 있으며, 대지면적 편입에 따른 대지의 공유지분은 증감이 있을 수 있으나,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 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한다. 단, 소수점 이하의 면적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을 하지 아니한다.
- 보성구역로 확장공사 준공시기가 사업준공 시점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중 화장실 대변기에 중수사용을 해야하므로 계약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5동, 106동, 107동, 120동, 121동, 122동, 123동, 129동)
- 사업지 내부에 저류조가 2군데 있습니다.
- 기부채납용지와 연결되는 광장과 어린이 놀이터에는 어떠한 차단시설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사업지 주변의 버스정류소 위치는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부채납부지 용도는 추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의거합니다.
- 사업승인(변경)도서에 의하여 시공계획이 수립되며, “시공자”의 품질관리기준 및 시공성, 유지관리, 기능성등을 고려하여, 최종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시공이 완료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대정읍 보성리 780번지의 경우, 기부채납 예정부지와 본 사업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향후 필지 분할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또는 서귀포시에 기부 채납 할 예정입니다.

▣ 설계 유의사항

구분	내용
----	----



- 본 공고문에 미 기재된 내용 및 오기된 내용에 대하여는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분양홍보물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한화 포레나 제주에듀시티 홈페이지 (<https://hanwha.forena.co.kr/jeueducation>)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 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한화 포레나 제주에듀시티 홈페이지(<https://forena.devnexmedia.com/jeueducation/>)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또한 홍보과정에서 주변 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등의 계획 또는 예정사항은 추후 관련 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으나, 관련 사항별 관계기관에 반드시 본인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하여야 하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 관련 팸플릿, 인쇄물 등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 각종 홍보물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주변현황 및 기반시설은 이미지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실제와 다를 수 있고 추후 변경 될 수 있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설치함)상의 외부 공간 식재, 시설물, 포장계획,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측량결과, 각종 평가 심의결과 및 사업계획(변경)승인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설계, 시공관련 적용기준의 우선순위는 견본주택, 준공도서, 도급계약서, 사업계획승인도서, 공사 시방서(착공신고) 순으로 정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문등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한 후 계약을 하여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문등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홍보물의 조감도 및 배치도 상의 주변 토지 및 건물 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현장 답사 및 사전 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도면은 견본주택에 비치되어 있으며,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층간 완충재의 성능은 시험실 인정성능 기준으로 현장 측정 시 시험실 성능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계약 시 체결된 건물의 계약면적 및 대지의 공유지분은 공부정리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나,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 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한다. 단, 소수점 이하의 면적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을 하지 아니한다.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본품목, 공간 분할 등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 분야별 도서 또는 홍보물 상호간 오류로 인하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공사용 도서의 구체화(세부도서작업) 과정에서 인·허가 도서의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수정 및 성능개선과 품질제고를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분양 시 홍보물, 모형, 이미지 등에 제시된 마감재 및 제곱집기는 실제 시공 시 재질, 색상, 디자인,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이 불리한 곳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합니다.
- 청약 및 계약 관련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청약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합니다.
- 청약 및 계약 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한화 포레나 제주에듀시티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https://forena.devnexmedia.com/jeueducation/>)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 관련 팸플릿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 각종 홍보물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은 분양시점 시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본 공사 시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시공사의 디자인 가이드 지침에 따라 입면 디자인 및 마감 등이 동등 수준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구비서류 등의 내용 변조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 인테리어 시공 업체, 부동산 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정리 완료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합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시공사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의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 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예정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입주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p>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공사 시 추가 지질조사 및 현장여건 등에 따라 가시설 및 구조방식, 기초의 형식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li> <li>- 외부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의 경우 수급불가 및 단종, 외부환경 및 현장여건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받지 않습니다.</li> <li>- 추후 인·허가변경 시 현장 여건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계약 이후 계약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합니다.</li> <li>-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건축허가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li> <li>- 조감도, 세대 평면도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li> <li>- 실 대지 측량 결과, 관련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건축허가인 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 물건의 견본주택, 단지배치, 단지내 도로 선형, 조경(수목, 수경, 시설물, 포장 등), 동·호수별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 상의 구획선,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분양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사용검사 신청 전 「주택법」 제42조제1항,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의거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에 따라 소음측정 시행, 법정 기준소음 이상 측정 시 해당 부위에 사업주체(시행사)가 소음저감시설(방음벽 등) 등을 추가로 설치 할 수 있으며, 방음벽 설치로 인한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단지 내 도록 옹벽, 돌담 등 및 건축 옹벽 디자인과 마감재, 녹지계획 등 실제 시공시 기능 및 성능개선, 주변 실제 현황, 인허가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계약자의 동의 없이 향후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 옥외 계단 및 엘리베이터, 계단실, 외부 통로 등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피해 및 사생활권, 조망권 등의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위치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li> <li>- 인허가 조건에 의해 일부 또는 전체 세대의 유리창에 조류충돌 방지를 위한 투명하지 않은 유리나 저반사 유리 등의 재질을 적용 할 수 있으며, 위치 및 재질은 현장 여건 및 인허가권자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li> </ul>
주변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아파트의 주변도로 및 단지 외부시설, 아파트 배치, 동·호수별 위치 등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외부의 차선 및 교차로, 횡단보도, 자전거 도로, 보도 등은 인허가 결과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서 임의로 재조정 할 수 없습니다.</li> <li>-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시설물 및 도로 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석축 등의 종류/높이/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과 단지 배치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조망권/환경권/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부대복리시설, 주민운동시설, D/A, TOP LIGHT, 상가, 관리동 등의 설치로 일조권 / 조망권 / 환경권 / 소음피해 /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필히 시설의 위치 및 규모를 확인하셔야 하며, 추후 설치 위치 및 시설면적 변경요구 등 근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본 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는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도로 폭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과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단지 내 아파트 동별, 향별, 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 일조, 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li> <li>-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송전탑, 소음, 진동, 분진, 조망, 일조, 진입로, 캠핑장, 다목적체육시설,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텃밭, 근린생활시설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단지 주변 도로 및 철도로 인한 소음, 진동 및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주변도로의 상황을 확인하시고 해당사항 미확인 및 위 사항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후 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북쪽 기부채납 부지가 향후 계획 될 예정이며, 인허가 조건사항으로 단지와 일부 연결되는 계획이 있을 수 있음.</li> <li>-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에 의거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상호 협의결과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옥외안테나가 설치 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li> </ul>
배치 및 동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단지는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이 혼용되어 설계된 단지이므로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li> <li>- 단지 내 시설물 명칭, 등은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ul>

- 본 단지는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구성된 아파트로서 협소한 부지 특성으로 보행자와 차량이 같은 공간에서 진·출입이 발생하여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해당사항을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단지의 계약체결일 이후 현장 여건에 따라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석축, 돌담 등의 종류·높이·이격 거리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합니다.
- 주출입구, 경비실 위치, 주차장은 교통 통제의 필요성, 효율성, 측량결과 등에 의거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실제 시공 시 대지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 및 조경면적, 자연지반면적, 인공지반 녹지면적 등은 축소 또는 증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부계획에 따른 단지 내 도로 선형, 산책로 등의 동선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설물의 위치, 규모, 외관 및 색채, 단지 명칭, 동 표시 등은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의 명칭은 향후 관할지자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하여 질 수 있으며, 분양 시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호수의 표기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명칭 및 동 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입주 시 본 광고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해당 관청의 인허가 조건[사업계획(변경)승인,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 결과 조건, 관계 기관 심의결과 등 포함]에 따라 단지 내·외의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및 비상차량동선 등), 단지 내 조경수 식재계획과 조경시설, 부대복리시설 등의 선형, 위치, 크기, 모양, 마감재료 및 대지경계선형과 같은 사항은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 도로와 대지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측량 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충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구조설계 확정 후 1층 토심의 두께 및 우수관경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외부와의 단차로 인하여 토목 또는 건축·조경 옹벽, 난간, 사면처리 등의 방법으로 시공되고, 주변 및 외부 여건 등에 따라 축조 규모와 형태 등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입주자 개별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아니하고 설계변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내·외·옥상부 공간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분양홍보물(모형, CG 등)상에 설명된 것과는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으며,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쓰레기분리수거장이 본 아파트 지상1층 외부에 설치되며, 해당 폐기물 및 쓰레기의 수거 또한 본 아파트 지상1층 동 외부를 통하여 수거됩니다. 계약자는 해당 사항을 필히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차장 출입구 및 소방용 비상차로에 인접한 세대는 음식물차량등에 의한 차량소음, 경보음, 야간 차량불빛, 공회전에 의한 매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주변도로 및 단지 외부시설, 아파트의 배치구조, 동호수별 위치, 단지 내 조정공간(녹지 등)등으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등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비상차로 및 포장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차량(소방차)의 정차위치로 표기/활용될 수 있습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이 간섭 받거나, 소음 피해 등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단지의 배치 특성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동간 거리, 세대 별 창호 위치 등의 상이에 따른 불편.
  - \* 본 계약물건의 계약 체결 이후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등과 배치 상 세대 상호 간의 향이나 층에 따른 불편
  - \*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부대시설, D/A(환기구),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쓰레기 분리수거장, 자전거보관대, 산책로, 근린생활시설, 경비실 등의 설치 및 통행에 따른 불편.
  - \* 단지 내 주·부출입구, 주차출입구, 부대시설, 경비실 등 단지 내외 시설물 등의 설치로 인한 불편.
- 대지경계선에 인접한 주동의 전면 또는 측면에는 단지와 도로 사이에 옹벽이나 석축, 돌담 주변 녹지내 보도 및 도로 등으로 인한 조망 침해, 사생활 침해가 생길 수 있으며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여건에 따라 옹벽 및 석축, 돌담 등의 위치, 높이, 재질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및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주변에는 쓰레기 분리수거장, 자전거보관소, D/A(환기구) 등이 설치되며, 저층 세대 발코니 전·후면 하부에 환풍, D/A(환기구)의 설치로 구조물, 그릴창, 그레이팅, 난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환경권 및 생활권, 조망권이 일부 제한되거나, 사생활 간섭을 받을 수 있고, 상세 위치는 설계도 및 분양자료 등의 시설물 안내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환기구(D/A 등)는 환기장치 작동 시 기류 및 장비소음 및 배기가스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시 시설물 배치 계획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요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상에 설치되는 주차장 환기용 그릴 및 채광창은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모형 및 홍보물 등에 표현된 장애인 점형 블록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당 단지 내 무인택배함의 설치 위치는 지하주차장 동출입구 인근에 1동당 1개소 계획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접근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설치 위치 및 개소, 택배함의 수량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이동통신설비 설치 예정 위치 : 지하 1층 - 101동 팬룸, 116동 팬룸</li> <li>- 단지 내에 전기, 가스 공급 및 오수처리(지하)를 위한 시설과 저류지가 설치 될 수 있으며, 이와 인접한 일부 세대는 그 시설의 작동 및 유지 관리를 위한 작업등에 의하여 소음, 진동, 냄새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규모 등은 기반시설 공급 업체의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li> </ul>
주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3동, 129동의 필로티 출입구는 구조에 따라 천장고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 101, 103, 114, 115, 116, 117, 122, 123, 124, 129동의 경우 주차장 출입구와 인접하여 소음, 매연, 빛, 공해 등에 의한 환경권의 간섭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해당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동·하부 지하층 및 지하층 주변에 환룸 또는 제연환룸이 계획되어 있으며,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li> <li>- 각 동 출입구의 위치 및 형태와 주출입구 문주 형태, 경비실의 위치 및 형태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li> <li>- 주동의 위치 및 동, 층, 호수에 따라 코어 및 주출입구 부분의 평면, 단면, 창호 형태 등의 계획은 서로 상이할 수 있고,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단지 내 레벨차이로 인해 단지 및 주동으로 진입하는 보행로는 단차(계단) 또는 경사로가 형성될 수 있으며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103, 129동의 경우 필로티 계획으로 인해 외부 통행 및 차량 주차로 인한 소음 발생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난방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li> <li>-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동별 형태 및 층수에 따라 대수, 속도 및 사양이 다를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기계실 및 승강로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각 세대의 배치 및 조합에 따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세대수에 차이가 있습니다.</li> <li>- 113동 서측 측벽에는 가스저장소가 설치 될 예정이며, 사전에 위치를 충분히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li> <li>- 이삿짐 운반 시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능한 라인이 있으며,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야 하므로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하여야 합니다.</li> <li>- 옥탑, 지붕, 외벽 등에 의장용 구조물, 야간경관조명, 공청 및 위상안테나, 피뢰, 측뢰, 항공장애등, 태양광발전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것들로 인한 소음, 진동, 빛의 산란으로 인한 불편함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건축물 측벽 또는 옥탑에 낙뢰예방(「건축법 시행령」 제87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을 위한 피뢰침이 시공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li> </ul>
단위 세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의의 구조를 추가, 구조변경, 마감변경 등은 입주 후 입주자대표회의와 본 단지의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상호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임의의 변경, 개량, 이용시 누수에 의한 하층의 피해등의 유지관리책임과 비용부담 의무와 책임이 따릅니다.</li> <li>- 견본주택 미건립세대인 99B/C/D/137은 99A/125/210은 136/120은 84 타입과 같은 마감재의 사양으로 진행되며, 평면형태 및 공간크기에 따라 마감 및 가구 구성, 가구 및 상판의 길이와 폭, 가구의 입면 및 도어 개폐 방향, 가구/마감재 색상의 조합, 거실 우물천장 및 커튼 박스의 크기 등이 상이하며, 분양자료(VR, 이형모형, 분양 카달로그 등)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주택형별로 확장 면적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하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동일한 타입의 단위세대도 발코니 세대 간 조건에 따라 서비스 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외벽 및 창호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li> <li>- 계약세대가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권, 소음 등이 다를 수 있으며 사생활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각 세대의 주출입구,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 등의 공간은 주거공용 부분으로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li> <li>- 단지 내 일부 저층세대는 공용부분 시설물(주동 출입구 캐노피등)으로 인하여 조망 및 채광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li> <li>-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동 및 인접세대에 의하여 조망권 및 향,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본 단지의 각 동 저층세대는 기존단지의 인접에 의한 일조 및 조망, 환경권 및 사생활의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시 충분히 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본 단지의 각 동 일부 세대 전·후면 녹지 내 대형수목 식재로 인해 일부 조망권이 간섭받을 수 있으며, 수목의 높이는 모형 및 CG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 야외 조경용 조명 및 공용부위 조명 등에 의하여 일부 세대는 눈부심이 발생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li> <li>- 본 아파트는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3)을 준수하며 층간소음 및 진동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엘리베이터, 기계실 운행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위세대 84, 99A, 99B, 99C, 99D, 125, 136, 210타입의 실내 천정고는 거실 기준 2.6m(다락 제외), 120,137타입은 2.4m(복층 2.1m)이며, 주방, 일부 단천정, 실외기, 다용도실 등 발코니 부분과 욕실은 상이합니다. (84, 99 타입 및 유사이형 타입의 주방은 2.5m 임)</li> <li>- 안내하는 세대 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냉장고류, 세탁기류 등) 및 가구 등이 길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김치냉장고, 세탁기류는 다용도실 출입문의 규격에 따른 규격 제한이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가전제품 사이즈를 확인하여 계약을 하여야 함)</li> <li>- 세대 내 입주자가 설치하고자 하는 가전제품(냉장고류, 세탁기류 등)의 사이즈에 따라 일부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li> <li>- 99C, 99D, 120, 137 타입의 다락 및 복층테라스는 조경공간(식재 또는 인조잔디)으로 마감을 견어 낼 시 건축 골조가 노출 될 수 있습니다.</li> <li>- 복층형 및 다락방형 타입에서 계단하부에 팬트리가 형성되거나 다용도실에서 세탁기, 건조기 배치시 계단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li> <li>- 화장실 직배기로 인해 배관이 외벽을 관통하므로 커튼 박스의 높이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li> <li>- 210타입의 수입주방은 아일랜드장과 쿡탑측 주방만 수입제품으로 시공되며, 냉장고장과 장식장 부분은 국내산 주문제작 제품으로 시공됩니다.</li> </ul>
발코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코니 부분의 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산정되었으며 바닥면적에 포함되는 초과 발코니 면적은 「공동주택의 발코니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지침(2006.1.23.)」에 의거하여 주거전용면적으로 산정하였습니다.</li> <li>- 전후면 발코니 및 콘크리트 난간 높이는 동 위치 및 층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실제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는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발코니 외기에 면하는 벽체에는 결로방지를 위한 단열재 시공으로 도면상의 면적과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 세탁실, 실외기실, 발코니 등에 결로 발생 예방을 위한 환기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li> <li>- 세탁기와 실외기가 설치되는 공간 또는 발코니에 수전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 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li> <li>-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인하여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발코니 확장 시 발코니 조명은 설치되지 않으며, 방등이 방 중심 쪽으로 위치 이동하여 설치됩니다.</li> <li>- 일부 발코니에 환기시스템(장비)이 설치되며, 본 시공 시 배관이 노출되거나, 내·외부 마감(창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건축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주방 발코니(다용도실)의 형상에 따라 입주 후 보일러 점검을 위해서는 세탁기 이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li> <li>- 주방 발코니(다용도실)에 수납용 선반이 설치되며, 세탁기 및 건조기 수직 배치시에 이동 설치는 개별적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li> <li>- 각 세대 내 안방 실외기실에는 전열교환 환기장치가 설치되어 배관이 노출되며,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안방 실외기실 천정에 설치되는 환기설비에 따라 발코니 천정의 높이가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li> <li>- 발코니 천정 높이로 인해 보일러 연도의 위치가 낮아 보일 수 있으니 사전 확인 바랍니다.</li> <li>- 우·오수 선출통의 위치 및 개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상부세대 세탁배수 배관은 유지관리의 목적으로 하부세대에 노출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바닥배수구, 오수배관 입상, 수전금구류, 악세사리류, 위생도기, 환기 디퓨저 및 전열교환기, 스프링클러 헤드 등의 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으며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li> <li>- 각 세대 내 대피공간은 하향식 피난사다리로 설계되어 있으며, 화재시 하부 세대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임의의 시설물, 장비, 가구 등을 설치할 수 없으며, 구조 변경 등이 불가하오니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전 타입은 하향식 피난구와 실외기실과 혼용된 공간으로 시공됩니다.</li> <li>- 하향식 피난구로 인해 층간소음 및 방범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시공사의 책임 범위가 아니니 이점 양지하시니 바랍니다.</li> <li>-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하향식 피난구로 인하여 실외기실 공간 활용이 제한적일 수 있으며, 피난 대피를 위한 당해 점검구의 위치는 층별로 다릅니다.(층별교차 시공)</li> </ul>
창호/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견본주택 창호에 설치된 유리는 견본주택 설치를 위해 임의로 지정된 제조사에서 생산된 제품이며, 본 공사시 유리 제조사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창호 및 문의 열림 방향, 이와 인접한 날개 벽체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홍보물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 날개 벽체 길이 등은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본 공사 시 외부창호의 제조사, 크기 및 두께, 재질, 색상, 디자인, 손잡이, 하드웨어, 유리사양, 개폐방향, 설치 위치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 공동주택 외부창호(발코니)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사양(유리, 하드웨어, 창틀)이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li> <li>- 침실과 욕실도어에 손끼임 방지 장치가 제공되며, 제품 사양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손끼임 방지 장치의 기술적 특성으로 인하여 마찰소음, 하드웨어 상/하단부의 틈새 및 빛의 투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세대 금속도어(현관방화문, 실외기실)의 프레임 및 손잡이는 사이즈, 형태, 위치 등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li> </ul>
전기/기계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세대는 개별난방으로 계획됩니다.</li> <li>- 세대 내 평면의 배치 및 구조에 따라서 각 세대별 전용부위 및 공용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배관 및 배선은 시공방식 및 길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복도 및 세대 점유 공간 천장 내부는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li> <li>- 세대분전반(전기분전반)은 세대타입, 옵션선택에 따라 안방, 침실 내부 벽체 중 한 곳에 설치되어, 미관을 저해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통신단자함은 세대타입, 옵션선택에 따라 현관 신발장, 팬트리, 드레스룸, 안방 및 침실 내부 벽체 중 한 곳에 설치되어, 미관을 저해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세대분전함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주택용 분전반 업무처리방법 특별강조 지시사항에 따라 노출된 장소에 시설되며 추후 위치 변경은 불가합니다.</li> <li>- 통합단자함은 초고속정보통신 건물 처리지침에 따라 노출된 장소에 시설될 수 있으며, 추후 위치 변경은 불가합니다.</li> <li>- 통신단자함, 세대(또는 호실)분전반, 전기 배선기구류, 조명기구, 전기 / 통신관련 마감재의 제품사양, 위치, 높이, 수량 등은 본 공사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좌우 세대 및 옵션선택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통신단자함이 현관 신발장에 설치되는 경우, 작동 점검 및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장비 설치시 수납물을 꺼내고 점검 및 설치하여야 합니다.</li> <li>- 단위세대 월패드는 세대당 1개소이며 월패드의 카메라는 미적용되었으며, 세대간 영상통화가 지원되지 않을 예정입니다.(102, 137 타입과 같은 복층형과 210타입은 2개소)</li> <li>- 벽걸이TV 설치 시 전선, 케이블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li> <li>- 욕실, 다용도실 등에 설치되는 바닥 배수구, 수전, 우수 선출통, 보일러 등은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호실 내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주방기구 하부장에 온수분배기가 설치되며, 본 공사시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주방기구 하부는 별도의 마감이 되지 않음)</li> <li>- 렌지후드 환기 배관 및 덕트를 점검하기 위한 점검구가 상부장 내부에 설치될 수 있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점검구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렌지후드 환기 배관으로 인해 일부 상부장 내에 자동식소화기 설치에 따른 사용이 제한 될 수 있으며, 환기 배관은 세대 천장, 발코니 천장, PD 등을 관통하여 외부에 배출되는 구조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li> <li>-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위치에 따라서 가스계량기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전기국립 설치 시 후드 내부에 전기차단기가 설치됩니다.</li> <li>- 발코니 확장 시 발코니 조명은 설치되지 않으며, 방등이 방 중심 쪽으로 위치 이동하여 설치됩니다.</li> <li>- 현관 쪽에 설치되는 일괄소등 스위치의 기능에는 승강기 호출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li> <li>- 발코니 및 욕실, 주방의 경우는 상부층 세대 배관 점검 및 보수를 위해 부득이 하부층 세대에서 천장 배관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li> <li>-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인하여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전열교환기는 하향식 피난구실에 설치됨에 따라 주방 발코니 천정에는 환기설비가 없으며, 이에 따라 발코니 천정의 높이가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li> <li>- 세대 환기(거실, 침실 급기 / 복도 배기)용 전열교환기는 하향식 피난구실에 설치되며, 전열교환기 및 급배기 디퓨저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전열교환기, 에어컨 등의 가동으로 인해 소음이 발생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세대 실외기실에는 배관, 선출통 및 드레인 등이 노출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li> <li>-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옵션 미선택 시, 거실의 에어컨 배관 및 콘센트는 벽체 하부에(스탠드타입 에어컨 기준), 안방 에어컨 배관 및 콘센트는 상부에(벽걸이 타입에어컨 기준) 기본 시공됩니다.</li> <li>- 옵션 선택 시 에어컨 배관 및 콘센트는 미시공 됩니다.</li> <li>- 세대 환기를 위한 전열교환기는 주택형별 상이할 수 있으며, 해당 위치는 견본주택 및 문의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일부 세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li> <li>-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전 평형 욕실 내 건식공간에는 바닥 난방이 설치되나 가구장 하부, 샤워부스, 욕조 하부는 설치되지 않습니다.</li> <li>- 욕실에는 바닥 배수를 위한 바닥배수구와 환기를 위한 욕실 팬이 설치됩니다.</li> <li>- 화장실 천정에 매립형태로 급수급탕 분배기가 설치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급수, 급탕 분배기 설치 부위는 별도의 마감이 되지 않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li> <li>- 각 세대 타입별 옵션 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기구류의 설치 위치와 수량, 사양이 상이 할 수 있으며,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송강기 운행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세대 내로 전달될 수 있으니 이점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실외기 설치 시 세대 설치 요건에 따라 냉매배관의 설치 방향 및 형태가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 벽체 내부에는 전기/통신용 배관 및 각종 설비배관(급수, 온수, 환기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시 안전상, 기능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전기쿠팡이 설치된 세대의 경우, 현관측 일괄소등 스위치 및 단위세대 월패드의 가스차단 기능이 전기차단 기능으로 변경됩니다.</li> <li>- 아일랜드장, 화장대 등 가구의 위치를 옮길 경우 바닥에 인출된 전선관 또는 케이블이 노출될 수 있으므로 위치 이동 및 철거 시 고려해야 합니다.</li> <li>- 일부세대는 침실1 발코니 쪽의 협소로 빨래건조대의 건조봉이 완전히 인출되지 않습니다.</li> <li>- 발코니에 면한 PVC창호(PL창호)의 경우 PVC시트로 마감되지 않으며, PVC 자체의 백색으로 시공됩니다.</li> <li>- 화장대 및 욕실 상판 석재류는 본공사시 자재 규격에 따라 분절되어 시공됩니다.</li> <li>- 주방가구, 일반가구, 선반가구, 욕실가구 등의 가구류의 경첩, 서랍재, 손잡이 등과 샤워부스의 하드웨어는 본공사 시 동급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화장대 설치시 내부 헤어드라이기 수납 악세서리는 본납시 새로운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습니다.</li> </ul>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지 내 공용시설(엘리베이터, 주차장, 편의시설,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의 경우에는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본 아파트는 지하1층, 지상 1,2층에 부대복리시설(어린이집, 경로당, 돌봄센터 포함) 및 129동 인근에 근린생활시설이 계획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소음피해 및 사생활권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지상1층 동 외부에 설치될 예정으로 일부 입주민에 주차장 배기 및 소음, 진동, 조망 저해, 냄새, 해충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위치를 필히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세대와 인접하다는 이유로 이동요구, 설치거부를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쓰레기분리수거장의 위치 및 개소는 사업승인 및 변경 도서 기준으로 시공되며, 시공 시 규모, 위치, 개소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고, 쓰레기수거장의 설치로 인한 미관저해, 냄새 및 소음, 분진,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위치를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자전거 보관소는 지상1층 동 주변에 설치되며, 위치와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자전거 보관소는 법 또는 사업승인 조건을 충족하는 수량을 설치하며, 설치 위치 및 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129동 인근에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하며, 입주 업종의 종류에 따라 저층세대는 냄새, 소음 등의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계약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시설의 구성 및 건축이용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본 공사 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관련 시설은 입주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부대복리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하므로 제공 집기 및 마감재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li> <li>- 주민공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상부에 실외기실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조망권, 간섭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 부대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은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의 규모 및 배치형태, 내부구조 등의 건축계획과 마감재, 집기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주민공동시설 내 일부 공간은 입주민을 위한 A/S센터가 운영된 뒤 향후 주민공동시설 등으로 변경될 계획입니다.</li> <li>- 단지 내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및 커뮤니티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 입주 후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운영됩니다.</li> <li>- 단지 내 부대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은 사업주체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li> <li>-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구성 및 외관, 건축 계획은 준공시점의 트렌드 및 시공, 인허가 과정에 의해 실 배치 계획, 구조, 내외부 마감, 창호의 위치 및 구성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 이후 설계변경 필요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li> <li>- 관리사무소는 동일 업체를 선정하여 별도로 운영 예정이나 향후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주민공동시설은 추후 시설의 사용용도에 따라 구성되어지며,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입주 후 입주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하자보수를 위한 업무시설 및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 장소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li> <li>-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은 지하 및 지상에 설치될 예정으로 인접 저층부 세대는 외부통행으로 인한 소음 및 야간조명에 의한 간섭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li> <li>-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비주거부분 등의 옥상 및 단지 주변에는 에어컨실외기, 급배기, 환기팬, 기계장비, 조명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한 저층 세대에 조망권 침해 및 소음, 진동, 냄새, 분진, 눈부심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아파트 계약자가 임의로 설계변경이나 대지지분 변경을 요구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단지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li> <li>-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실외기 시설이 시설의 옥상 또는 인근동 주변 및 동 1층 필로티 공간 등에 설치될 수 있으며, 배관이 아파트 공용부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설치 상세 계획은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근린생활시설, 관리사무소,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등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로 인한 인근세대의 소음 등의 환경권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의 옥상에는 실외기가 설치되며, 일부 근접세대의 경우 소음 및 진동, 시선 간섭 등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의 환풍, 실외기실, 배기탑 및 제연환풍 D/A 등의 지상 돌출물의 위치 및 형태 일부가 공사 중 변경될 수 있고 일부 저층세대에서 소음 및 진동, 시선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지하층에 설치되는 기계실, 전기실, 저수조, 환풍 등은 본 시공 시 위치 및 크기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발전기 가동시 발전기 D/A 인접세대 및 보행자에게 소음, 진동, 매연 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위치 및 설치 개소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무인택배설비업체 운영지원 무상기간은 1년이며, 그 이후 “을”은 서비스 적용과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li> <li>- 각 동별 세대수 대비 무인택배함 수량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ul>
<p style="text-align: center;">주차계획 (지하주차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하주차장 진입 유효 높이 및 택배차량이 진입 가능한 지하주차장 주행로 높이는 2.7m 이상 확보되어 있고 그 외는 2.3m 이상 확보되어 있습니다.(지하주차장 통행 폭은 6.5~7m) (지하주차장 통행 폭은 6.5m~7m입니다.)</li> <li>- 주차대수는 대지형태, 주동배치에 따라 동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주차대수는 전체세대에 대한 지하에 배치된 주차대수의 평균 대수이므로 각 동과 인접된 주차장이 주차대수보다 부족하다 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li> <li>- 단지 내 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본 아파트의 주차장에 해당하는 지하주차장은 통합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현재의 배치, 차량 동선에 의하여 동별 주차 배분, 출입 동선의 길이 등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 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주차장 및 기타 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 부분 등의 면적은 변경 사용될 수 없습니다.</li> <li>- 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li> <li>- 주차장에는 근린생활시설의 배관, 케이블 및 기타설비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주차장은 최종 사업계획승인 도서에 준하여 시공되며, 현장 여건에 따라 경미한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주차장, 부대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이용에 대하여 각 동별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배치 및 이용여건 등에 대해 충분히 확인 바랍니다.</li> <li>-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는 지하주차장에 분산 배치되어 있으며, 동별 접근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입주 후 기기에 대한 유지, 관리, 보수 및 전기세 납부는 입주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관리해야 합니다.</li> <li>-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은 습도 및 온도차에 의해 결로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주기적으로 환기를 적절히 시행하고 관리 차원의 예방 조치가 필요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li> <li>- 주차장 출입부의 디자인은 현장여건에 따라 분양모형과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li> <li>- 주차장은 계획상 기동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일부 주차면에는 기동과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 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 주차장 및 펌프실, 전기실 등의 환기를 위하여 D/A(환기구)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시야 가림, 소음, 분진,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단, 해당시설의 위치는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ul>
<p style="text-align: center;">조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지 녹지, 조경 식재 및 시설, 포장, 조경부대시설, 동선계획 등의 면적, 위치, 규모, 수량, 크기, 색채, 형태 등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li> <li>- 외부 조경 식재 및 시설물(녹지, 잔디, 수목, 휴게시설, 운동시설, 조경시설물, 보도/차도 포장재, 가로수, 외부조명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물로서, 입주민에게 인계된 이후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 및 특정서비스에 관한 책임 및 발생비용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li> <li>- 단지 조경선형, 바닥포장 및 세부 식재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조경(식재, 시설물, 공간계획, 수경시설, 포장 등)은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세부계획에 따른 단지 내 도로선형, 산책로 등의 동선계획이 및 단지 내부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단지 내 조경공간에 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이 노출되어 있습니다.</li> <li>- 단지 내 식재계획의 위치와 규모, 수종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각종 시설물의 규모, 재료, 형태, 색채, 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부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 조경, 조경수 식재는 단지조화 등을 고려하여 설치나 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 또는 시공과정에 의한 설계변경에 따라 도로의 선형 및 포장, 조경시설물의 색채, 형태, 재료,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 관련 팜플렛, 인쇄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 조경(식재, 시설물, 공간계획, 포장 등)은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따른 소방안전 검토에 따라 설계 시 반영된 소방차 전용구간 및 소방/안전 활동을 위한 구획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조경계획이 변경되거나 수목이 삭제, 변경될 수 있으나 이는 민원대상이 아닙니다.</li> </ul>
입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동 외부 특화 계획에 따라 세대별로 외부 창호의 크기, 색상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 전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li> <li>- 단지 내 건축물의 색채, 형태, 패턴, 마감재와 같은 외관 디자인은 시공 상의 문제 또는 향후 지자체 경관 자문 및 시공과정 상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각 주동의 외벽에 부착되는 싸인물, 장식물은 분양모형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 본 아파트의 외부 색채와 외부 상세계획 등은 인·허가, 색채심의 및 법규의 변경, 디자인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본 단지의 외부 마감에 따라 일부 세대의 전/후면 발코니 등에 장식물 및 외부별도 마감재가 부착될 수 있으며, 아파트에 부착되는 옥상 장식물과 난간, 기타 부착장식물 등은 인접세대에 소음 및 눈부심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li> <li>- 본 아파트 근린생활시설의 외관 및 색채, 마감자재는 분양 후 외관 개선을 위해 변경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의 경우 별도의 동의 없이 진행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 외의 경우 추후 관련한 내용의 안내에 따라 설계변경 동의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 설계변경 동의서의 미 협조 시 외관 개선이 불가하며, 견본주택에 전시된 모형 및 CG를 기반으로 시공됩니다.</li> <li>- 본 단지에 적용된 각종 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디자인 일체는 사업주체의 고유한 자산이므로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 사유발생 및 마감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별도의 동의절차를 받지 않습니다.</li> <li>- 인허가 진행 및 본 공사 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아파트 및 부대시설의 외관디자인(입면 마감재료 및 색채, 축벽디자인, 옥탑장식물, 몰딩, 창틀 모양 및 색상 등), 필로티, 동 현관, 캐노피, 지하출입구, 난간 디테일, DRY AREA, 조경패턴 등 외부 시설물 등은 관계기관의 협의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li> <li>- 본 단지의 저층부, 근린생활시설의 외부 입면 디자인과 마감재 변경 및 기타 설계변경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아파트 축벽 로고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취향 민원에 의한 변경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li> <li>- 외부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의 경우 수급 불가 및 단종, 외부환경 및 현장여건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습니다.</li> <li>- 주동 외벽 등에 장식물, 조명 및 외부별도 마감재가 부착될 수 있으며, 외벽에 부착되는 장식물, 조명, 난간, 기타 부착장식물 등은 인접세대에 소음 및 눈부심 등을 일으킬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주동 및 부대시설의 외관(입면, 창호, 난간, 로고 등의 형태 및 색), 공용부분의 계획(조경, 주동출입구, 지하출입구 등)은 실제 시공 시 설계 개선, 시공성, 편의성, 구도 등의 개선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습니다.</li> <li>- 단지 내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li> <li>- 단지 내 노출되는 옹벽이나 구조물의 마감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 데크형태의 입면(옹벽, 조경석, 토목옹벽 등의 구조물, 주차출입구,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입면 포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ul>
전기/통신/ IoT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지 내 전기공급을 위한 한전 시설물(전주, 변압기, 개폐기 패드 등) 및 통신사업자 시설물(케이블 등)이 동 주변 지상에 설치되어 일부 세대에서 보일 수 있고, 해당 설비 및 전력맨홀, 통신맨홀 등의 위치와 외부 배관 인입위치는 한국전력, KT 또는 기간 통신사업자와의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통신실(TPS실)의 Work Group Switch Hub, 광분배기 및 통신 세대단자함 내에 시설되는 MultiPlexer 등은 기간사업자 제공 분으로 시공사에 설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li> <li>- 홈넷서버 운영을 위한 전용IP 비용은 준공 후 6개월까지 지원함. 그 후 발생하는(인터넷 업체 변경 포함) 전용IP 비용은 입주자 부담입니다.</li> <li>- 주차관제시스템 등 입주자 편의시설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개인정보(휴대전화번호, 차량번호 등)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li> <li>- 주차관제시스템(입출차 차단기 등)의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 조명기구 설치로 인해 일부 세대는 다소 불편함을 겪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신재생에너지 공사(ex:태양광발전공사)는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설비의 구조 및 형태, 설치 위치가 변경 시공될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에너지 생산량은 자연환경 및 입주자의 유지관리 유무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음.</li> <li>-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한 한화건설 모바일 전용 APP이 제공되는 경우, 해당서비스는 준공 3년 이후, 홈넷 및 무인경비공사 업체와 유지보수 계약을 요하는 유료로 전환되며, “을”은 서비스 적용과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또한 전용 APP 서비스 중 일부는 기간사업자(통신사, 포털사, 가전사 등)의 연동을 통하여 제공될 수 있으며, 기간사업자의 서비스 정책에 따라 변경(유료/무료/서비스 내용)될 수 있습니다. (한화건설 전용 APP 미적용 시 홈넷사 제공 APP 적용됩니다.)</li> <li>- 견본주택 영상의 IoT 기능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입주 시 미구현 또는 성능개선 등 서비스 항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스마트폰 원패스 기능은 휴대폰 및 사용 OS 버전 등 아래의 내용에 따라 사용이 제한 될 수 있음. 또한, 아래의 기능이 휴대폰 내에서 활성화 시에만 기능이 구현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PS, Bluetooth, 위치권한, 원패스 어플리케이션 활성화 등이 ‘ON’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휴대폰 배터리 사용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li> <li>• 최소 요구사항 : Bluetooth Version 4.0 이상 / Android : v4.3 이상 / IOS : v13.0 이상 / Galaxy S6 이상 및 Apple I-phone 6s 이상</li> <li>• 해당 어플은 최신 상태를 유지</li> </ul> </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열재 사양 및 공공부, 부대시설, 필터티 계획 등 관련법규(「건축법」,「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전기&amp;통신시설물(공용조명 포함), 단지 홍보용 사인물, 포장시설, 수목관리 등)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li> <li>- 공공부위 조명 및 경관조명, 보안등, 조경용 조명, 싸인용 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li> <li>- 단지 내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인허가 관청의 미술장식 설치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수량 등은 심의과정과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한국전력 전기 공급약관에 의거하여 부지 내 한전 개폐기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li> <li>- 동파가 우려되는 설비배관에는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적용되며 이에 따른 전기료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li> <li>- 소방내진법규에 의거하여 위생/소방용 수조의 규격, 재료, 형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준공 시 소방 및 장애인 기준에 관련된 사항은 허가 완료 시 보다 법적 의무 적용사항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기준에 맞춰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므로 이를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분양 시 계획된 야간경관조명 계획은 야간경관심의 의견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 경관조명으로 발생하는 유지, 보수 등에 대한 비용은 입주자가 관리비로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ul>

▣ 견본주택 유의사항

구분	내용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견본주택은 84,99A,136타입만 설치되며, 견본주택에 미설치된 99B,99C,99D,120,125,137,210타입에 대해서는 분양 상담을 통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평면 및 마감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li> <li>-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든 CG, 모형, 홍보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견본주택 모형의 색상, 입면, 구조물, 주중 출입구 등은 본 공사 시 디자인 및 구조, 재질, 설치 위치 등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li> <li>- 견본주택 모형 단지 경계 외부는 이해를 돕기 위한 표현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청약 및 계약 전 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견본주택 모형의 단지 경계 내 바닥표현의 재료는 블록 포장으로 모형의 스케일에 따라 표현에 한계가 있는 사항으로, 본 시공 시 패턴 및 색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청약 및 계약 전 해당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견본주택 내 조명, 디스플레이용 장식품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본 공사 시 제외되며,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 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급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견본주택 내 설치된 CCTV는 견본주택용으로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li> <li>-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를 거쳐 폐쇄 및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 전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견본주택 내부를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li> <li>-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및 스프링클러는 견본주택 자체의 소방시설이며, 본 공사 시 설계도면 및 화재 안전기준에 의거하여 설치됩니다.</li> <li>-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분전반, 통신 단자함, 배선기구류, 단위세대 월패드 등은 제품의 성능, 디자인 및 기능 개선을 위해 제품 사양, 위치,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견본주택 내에 설치된 전시조명 및 디스플레이 연출용 조명은 연출을 위한 조명으로 본공사에 적용되지 않는 품목입니다.</li> <li>-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분양홍보물,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위치, 규모, 색채 및</li> </ul>

	<p>설계도면 등의 표시가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승인 및 신고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경우에는 인·허가 내용대로 시공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이버 견본주택의 VR 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 동영상상이므로 사이버 견본주택상의 전시품목 안내 및 견본주택은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습니다.</li> <li>-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 환기 장치, 환기 디퓨저, 온도조절기, 콘센트 및 바닥배수구, 욕실환풍기 등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실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어려운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 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카달로그 내용과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공급계약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주자모집공고문과 공급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li> </ul>
전시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양 시 홍보물 및 실내투시도에 표시된 가전제품 및 인테리어 소품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계약 시 비포함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와 감지기는 견본주택용 소방시설로, 본 시공과 무관합니다.</li> <li>- 견본주택에 설치된 보조 조명, 커튼, 소파, 거실장, 거실 테이블, 침대, 책상 등의 이동식 가구, 디스플레이 가전, 액자 및 소품은 세대 연출을 위한 것으로 본 공사 시 시공에서 제외합니다.</li> <li>- 견본주택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무상옵션 품목 뿐 아니라 추가선택 품목도 설치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 전 마감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ul>
사이버 견본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이버 견본주택의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으로 실제 적용시 설계 도서에 준하여 적용될 계획이며, 청약 및 계약 전 견본주택 내 비치된 설계도면 및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람에 추후 이와 관련된 어떠한 민원 및 민·형사상의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사이버 견본주택에 표현된 창호 외부에 보이는 전경은 이미지일 뿐이며, 본 전경 이미지는 평형 별 동·호라인의 조망 및 향에 따라 준공 후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li> <li>- 홈페이지, 각종 인쇄물 등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그림 등은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시기 바람에,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기반시설 및 개발계획은 사업주체나 시공사가 아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해당공사 등이 설치하거나 추진하는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홈페이지, 각종 인쇄물 및 견본주택 사인물에 삽입된 광역위치도, 교통망, 토지이용계획도, 조감도, 단지배치도, 조경 및 부대시설,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평면도, 이미지 컷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홈페이지의 VR 동영상 및 카달로그 등 각종 인쇄물에 사용된 인테리어 사진은 견본주택을 사전에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의 추가선택형 품목,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용품이 포함된 것으로 계약 전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견본주택 상의 전시품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견본주택 개관 전 사전에 이루어진 광고, 홍보 상 부대시설 및 기타사항 등은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 축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li> <li>- 각종 홍보물 상의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작은도서관, 관리사무소,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게스트하우스, 경로당, 어린이집, 돌봄센터 등)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제공여부, 수량,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향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길 바람에, 추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각종 홍보물에 분양홍보 자료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며, 개발계획 예정도 등은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li> <li>- 견본주택 및 도면에 표현된 바닥배수구, 선홍통, 온도조절기, 콘센트, 환기디퓨저 등의 제품 사양 및 위치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ul>
홍보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카달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일러스트(그림) 등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다소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li> <li>- 분양 홍보에 사용된 모형(단지모형 등)과 공급 안내문, 카달로그 및 각종 인쇄물, 홍보영상 기타 홍보물에 삽입된 CG(광역 위치도, 조감도, 배치도, 투시도, 주민공동시설 평면도, 입체도와 평면도 등),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평면도(치수, 구획선), 실내투시도(색상, 구획선), 면적 및 도면 내용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개략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람에,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에, 기본형 선택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공간 분할 등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분양 홍보물 및 모형에 표현된 주변토지 및 건물 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계약 전에 현장답사 및 사전확인을 통하여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람에,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배포된 홍보물 등은 사전 홍보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견본주택을 확인하시어 계약 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li> <li>- 각종 광고 및 홈페이지 VR, 홍보물(카달로그, 전단, 안내문 등) 등 홍보과정에서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은 추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으며, 홍보물 제작과정에서 오기·오타자로 인하여 잘못된 기재 될 수 있으니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li> </ul>

- 단지 이미지 컷 및 전시모형은 전 세대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카달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과 견본주택 내 전시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의로 가구 및 집기류를 표현하여 촬영 또는 제작 연출한 것으로 식재 및 색상, 시설물 등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축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의거합니다.

■ 하자담보 존속기간 및 하자보수

- 하자담보 존속기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5조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하자의 판정은 국토교통부 고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 적용됩니다.
- 콘크리트의 폭 0.3mm이하의 미세한 균열은 공사상의 하자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 하자보수 절차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하자 판정 기준 도면은 사용검사(사용승인) 도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아파트 입주자의 하자보수 관련 일체의 입주자 피해 보상은 「공동주택 관리법」 제36조, 제37조, 제38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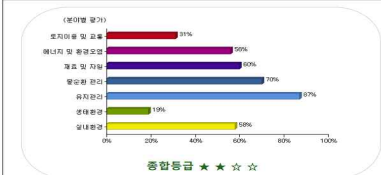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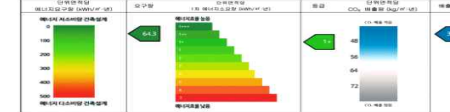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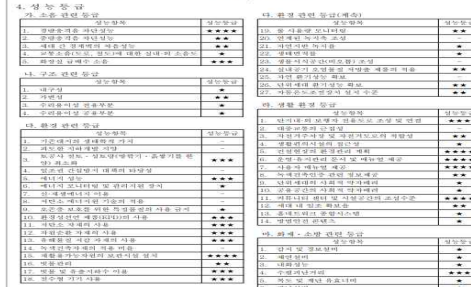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 규정

구 분	적용여부	비 고
고기밀창호	적용	직접 외기창, 거실방화문은 기밀성능 1등급 적용, 간접외기 세대현관문 기밀성능 2등급 이상 적용
고효율기자재	적용	수변전, 급수펌프, 보일러 고효율 기자재 적용
대기전력차단장치	적용	세대 내 대기전력차단장치 설치
일괄소등스위치	적용	세대 내 일괄소등스위치 설치
고효율조명기구	적용	지하주차장 조명기기 및 유도등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적용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설치
실별온도 조절장치	적용	단위세대 실별 온도조절장치 설치
절수설비	적용	세대내 절수형 수전설치

※ 친환경주택은 사업승인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관련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공동주택 성능등급의 표시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8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른 표시

녹색건축물 예비인증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공동주택성능등급
<p><b>녹색건축 예비인증서</b></p> <p><b>건축물 개요</b></p> <p>건축물명 : 한화 로레나 제2예비인증서          건축주 : (주)하이팩스          준공연도 : 2024.09.27.          용도 : 주거용(주택) / 사용면적 : 117,416.5900㎡ (부기면적: 116,439.5600㎡)          용적률 : 117.41659000 (용적률제한: 116.43956000)          용도 : 주거용(주택) / 사용면적 : 117,416.5900㎡ (부기면적: 116,439.5600㎡)          용적률 : 117.41659000 (용적률제한: 116.43956000)</p> <p><b>인증 등급</b></p> <p>인증 등급 : 우량(나등급) (인증기준: 녹색건축인증서 제2023-04-03호)          인증 기준 : (주)인공합성건축사사무소 (인증기준: 녹색건축인증서 제2023-04-03호)</p> <p>이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우량) (그린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p>  <p>2023년 07월 07일 한국부동산원장</p>	<p><b>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b></p> <p><b>건축물 개요</b></p> <p>건축물명 : 한화 로레나 제2예비인증서          준공연도 : 2024.09.27.          용도 : 주거용(주택) / 사용면적 : 117,416.5900㎡ (부기면적: 116,439.5600㎡)          용적률 : 117.41659000 (용적률제한: 116.43956000)</p> <p><b>인증 등급</b></p> <p>인증 등급 : 나등급 (인증기준: 녹색건축인증서 제2023-04-03호)</p> <p>이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나등급) (그린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p>  <p>2023년 07월 07일 한국부동산원장</p>	<p><b>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b></p> <p>1. 공동주택명 : 한화 로레나 제2예비인증서          2. 인증 기준 : (주)하이팩스          3. 인증 연도 : 2024.09.27.          4. 인증 등급 : 나등급</p> <p>이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나등급) (그린등급) 공동주택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p>  <p>2022년 07월 07일 한국부동산원장</p>

■ 관리형 토지신탁

- 본 공급물건은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 「신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위탁자인 (주)하이팩스, 시행수탁자 (주)하나자산신탁, 시공사 (주)한화건설 및 대출금융기관간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 방식으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분양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 본 공급계약에서 시행수탁자 (주)하나자산신탁의 분양 물건에 대한 분양공급지(매도인)의 지위에 있으나, 본 건 신탁의 수탁자로서 신탁계약에 의거 신탁업무 범위 내에서 신탁재산을 한도로만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본 공급계약으로 인한 매도인으로서 일체의 의무 및 실질적 시행 주체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신탁계약의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하이팩스가 부담하고 있음을 인지합니다.
- 본 공급물건은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신탁사업에 의거 공급되는 물건인 바, 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하이팩스와 수탁자 (주)하나자산신탁 간 신탁해지 등의 사유로 “신탁계약”이 종료 또는 해제되는 경우 (개별 수분양자에게로의 소유권 이전 포함), 본 사업상 시행자의 지위에 기한 수탁자의 모든 권리·의무는 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하이팩스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되며, 이에 따라 수탁자의 수분양자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도 공급계약서 변경 등 별도의 조치없이 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하이팩스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됩니다.
- 분양계약자는 본 분양물건이 토지신탁사업에 의거하여 공급되는 재산이라는 특수성을 인지하고, 하자보수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하이팩스와 시공사인 (주)한화건설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 분양수입금은 토지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또는 그 밖의 부대사업비와 이와 관련한 PF대출금 상환 등 해당 분양사업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급계약상 내용 외 수분양자와의 별도의 협약, 계약 등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별도의 협약, 계약 등을 근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급계약과 관련된 분양대금은 반드시 공급계약서에 규정된 시행수탁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매매)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매도인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감리금액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단위 : 원 / VAT포함)

구분	건축 / 토목 /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회사명	(주)태원종합기술건축사사무소	(주)력기기술단	(주)범시엠건축사사무소	(주)웅진엔지니어링
감리금액(VAT포함)	3,790,375,600원	435,455,398원	257,400,000원	59,000,000원

■ 주택도시보증공사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하였습니다.

보증기간	보증금액	보증서번호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362,245,380,000	제 01292022-101-0009200 호

▣ 보증 약관 주요 내용

-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친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유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흡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 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제4조 (보증사고)

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같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아파트 공사 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 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시행수탁사	시행위탁사	시공사
상 호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이팩스	주식회사 한화건설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예두시티로 42	경기도 시흥시 대은로 81(대야동, 모비딕빌딩 8층)
법인등록번호	110111-1714818	131111-0372604	110111-2558405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건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함)

■ 사이버 견본주택 : 한화 포레나 제주예두시티 홈페이지(<https://forena.devnexmedia.com/jejuedacity/>)

■ 견본주택 위치 및 분양문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2468 / 문의 ☎ 1533-1800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공급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공급계약 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공사 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 비치된 마감재 목록표를 확인 바랍니다.

■ 견본주택

구분	약도	안내사항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시간 : 10:00 ~ 18:00</li> <li>※ 정부방침에 의해 '주52시간 근무제'가 본 견본주택에도 적용됩니다.</li>   <li>■ 운영기간 : 분양종료시까지</li> <li>※ 분양일정에 따라 견본주택 관람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대표번호를 통하여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분양문의 : 1533 - 1800</li>   <li>■ 홈페이지 : <a href="https://forena.devnexmedia.com/jejueducity/">https://forena.devnexmedia.com/jejueducity/</a></li> </ul>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